

국내입법의견조사 94-3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1994. 8.

연구책임자 이준우 (수석연구원)
공동연구자 김정순 (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1편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I. 문제의 소재	7
II. 각계의 입법의견	12
1.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12
2. 입법체계 및 입법형식	15
3. 무과실책임의 도입문제 -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16
4. 제조물의 범위	19
5. 책임론	24
5. 손해의 배상	32
6. 손해배상의 이행확보와 절차	36
III. 입법방향	39
1. 쟁점사항의 정리·평가	39
2. 입법방향	44
IV. 참고자료	49
<<제조물책임법(안)의 주요항목 비교>>	49
<<제조물책임법·법안·시안의 주요사항 총괄비교표>>	59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상황>>	62

제2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소개

I.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중 관련 입법의견	67
1.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중 관련 입법의견목록	67
2.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중 관련 입법의견요지	69
II. 최근입법의견 동향	81
1. 최근입법의견목록	81
2. 최근입법의견요지	86
III. 주요입법예고법률안	136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목록	136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내용	137
IV. 최신법령 목록	149

제 1 편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I. 문제의 소재

오늘날 대량생산·소비의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사고들의 유형이나 범위는 점점 다양해지고 확대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범위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의 발생을 가능한 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요건하에서 물품의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하는 사후처리문제가 私法이 해결하여 주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의 전통적 책임이론으로는 현대의 높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복잡화로 야기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결에 충분치 못한 점이 있으므로 이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私法이론으로서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리의 발달과 판례의 축적을 바탕으로 유럽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입법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¹⁾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입법화되지 아니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개념 정의 자체가 우선 검토하여야 할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그 제조물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이라고 말하여 진다.

1)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제조물책임의 제도를 판례법으로 확립하였고, EC에서는 1968년 이후 제조물책임법의 통일화를 위한 검토가 행해져서 1985년 7월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되어 현재 대부분의 EC가입국이 제조물책임법을 완료한 상태이고, EC가입국 이외의 유럽제국의 자유무역연합인 EFTA에서도 EC지침의 국내입법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유럽의 제조물책임의 통일화 경향은 유럽이외의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입법을 한 국가로는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투스부르크, 덴마크, 포르투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92. 10. 9 성립, 시행일 미정), 리히텐슈타인(93. 1. 14 제정, 시행일 미정), 프랑스(양원협의안, 법률안심의중), 스페인(법률안 작성중),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일본(1994. 6. 16, 1994. 6. 22 양원통과: 1년 후 시행) 등이 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와 입법방안이 제기되어 왔다. 1982년 2월 의원입법으로 제조물책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이후 1989년 한독법학회가 '생산물책임'이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학술잡지를 발간하는 등 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또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제조물책임법시안의 마련과 함께 제조물책임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으며, 바로 최근 1994년 6월 27일에는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현행 민사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으로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민사책임체계로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제조자와 소비자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무과실책임이긴하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인 확대손해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 하자담보책임도 불가능하고, 가해자의 고의·과실은 실제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 책임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불법행위책임으로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민법상의 한계 때문에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여 제조자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로 진전된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무과실책임원칙은 제품의 위해에 관한 정보력의 차이를 전제로 한 위험의 공평한 분배라고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현대산업사회의 대량생산·판매·소비의 경제체제 아래서 제조자에 대하여 사회적, 윤리적인 면에서 이윤추구보다는 그 상품을 통상적 용도에 있어 안전하게 제조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전제로 성립한다. 이는 결함상품의 제조에 대한 제동장치로서 역할한다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기존의 민사법상의 과실책임원칙과 법리를 특정분야에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방법과 하나의 독립된 책임법리로서 입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입법의 경제성, 제조자와 소비자사이의 공정성, 제조자와 제조자 간의 공평성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사법 전반의 책임원칙과 법리와의 관계에서 고찰되어야 할 문제이다.

법현실적으로는 시장개방과 국제무역자유화 추세에 비추어 제조물책임을 여

더나라의 수준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우리의 법체계가 외국과 다르다면 동일기업이 동일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외국의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 불공평한 일이 있게 된다는 점, 또한 안전성시험이 끝나지 않은 상품이 대거 수입되어 결국 국내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며, 국내기업도 내수에만 치우쳐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확립된 원칙 내지 법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당면한 목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제조물책임의 도입은 위해방지를 위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 및 사고예방대책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남발로 인한 인적 물적 소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객관적인 결함의 판정기관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업계의 우려도 강하다. 특히 생산비용의 증가보다도 분쟁의 확대와 소송의 남발로 인한 기업의 신용손상은 승소의 경우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조물책임의 이념적, 법적, 현실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란 형태로 그 해결을 모색할 것인지 여부 및 입법시 제조물책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들 수가 있다.

1)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결합제조물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실태와 구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체계내에서 해석론적으로 구제해 나가도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새로운 규정)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입법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즉, 새로운 입법없이 기존의 민법규정내에서 과실의 추정, 입증의 분배,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이용하여 해결할 것인지, 별도의 책임의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입법을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2) 입법체계 및 입법형식의 문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체계로 보아야 할 것인가, 즉 민사특별법체계에 속한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보호법의 체계에 속한다고 볼 것인가, 그리고 형식적으로 단행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법전 또는 상법전이나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3) 무과실책임의 도입문제는, (제조물책임입법시)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를

제조자의 과실에서 구하는 과실책임의 원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을 핵심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으로 이론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4) 결합개념의 문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책임발생의 기초가 되므로 결함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결함을 판단할 것인가라는 결합인정에 대한 결합판단기준과 결합판단시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5) 개발위험의 항변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제조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도 그 한 사유로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의 지식수준으로는 그 결합의 존재(개발위험)를 인식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한 경우(무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자의 면책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개발위험의 항변의 인정여부는 제조물책임의 한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각국에서 이의 채용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6) 입증책임의 경감의 문제인 결합 및 인과관계의 추정의 인정여부의 문제는 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한 현행제도보다 나아진 것은 없다고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 결합의 존재와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결합의 시기와 추정인정의 경우를 특정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7) 제조물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포함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에는 특히 제1차농수산물, 수렵물, 부동산, 혈액, 전기 등이 있다.

8) 책임의 주체의 문제는 무과실책임(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부품이든 원재료이든 완성품이든 당해 물건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표시제조자, 수입업자, 임대업자, 판매업자 등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9) 연대책임의 문제는 제품의 생산에는 다수의 제조사업자가 관여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그 제품의 결함이 어느 단계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누가 어떤

한 책임을 지는지를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사업자들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여 소비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10)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문제는 어디까지 제조물책임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가로, 이는 귀책근거(소비자보호냐, 손해전보냐), 보험의 방식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또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손해배상의 한도액, 면책액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11)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의 문제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기간제한을 들 것인지, 둔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것이다.

12) 특약에 의한 사전면책 · 제한의 금지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이 사전면책 · 제한약관에 의하여 면책 · 제한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13) 배상이행확보의 문제(책임보험가입강제의 문제)는 자력이 충분치 못한 제조자의 제조물에 의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피해자구제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기업의 배상책임위험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 계속적으로 기업의 유지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방안으로는 구제기금조성, 공탁, 공체사업, 국가에 의한 보장사업(재보험의 인수, 사회보험의 충실 등)을 들 수 있으나, 주로 책임보험의 가입강제여부가 다투어 진다.

14) 구제절차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집단소송의 도입문제는 현행민사소송법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동종의 불특정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구제를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단소송 등을 입법론 내지 해석론으로서 도입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조물책임입법과 관련한 각계의 입법의견을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 · 검토하고, 여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1)입법의 필요성, 2)입법의 체계 및 형식, 3)제조물의 범위, 4)책임론, 5)손해의 배상, 6)손해배상의 이행확보와 구제절차로 대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입법의 내용에 관하여는 ①무과실책임 도입여부, ②결함의 개념, ③책임주체, ④개발위험의 항변이 문제가 되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①배상의 범위, ②특약에 의한 사전면책 및 책임제한의 금지, ③책임의 한도액 및 면책액의 인정여부, ④청구권의 기간제한 등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될 것이다.

II. 각계의 입법의견

1.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찬성론〉

○ 배병휴(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입법의 타당성여부를 놓고 논하기에는 이미 물건너 갔고, 입법은 당연하다. 다만, 입법의 기술·내용이 문제이다. 하위법에서라도 기업의 반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 양창수(서울대 법대 교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다해도 지금까지와 달리 크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의 법상태에 과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은 요건을 명료화하고 처리절차를 간명화하여 법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의식화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필요하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 이은영(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민법의 과실책임원칙 아래서 과실의 추정, 주의의무의 엄격화, 인과관계입증의 경감 등의 편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므로 새로운 책임체계를 수립하는 입법이 요망된다. 그 입법에서는 ①위험책임의 체계를 도입하되 생산자의 책임한계를 적절히 수립해야 하며, ②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각 책임주체사이의 법률관계(연대채무, 기여분 등)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③결합유형에 따른 결합판단의 기준의 제시, ④그 밖에 면책특약이나 면책약관에 의한 책임의 배제·제한의 금지도 규정되어야 한다(이은영(1989), 채권각론, 689쪽).

〈 신중론 〉

○ 황의록(아주대교수, 전 소비자학회회장)

원칙적으로 도입에 찬성한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공정한 분쟁해결방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당위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하고는 별도의 것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제조물책임도입의 부작용과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피해의 최소화와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 이용한(전경련 이사)

법제정에 앞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정비·흡수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입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원칙적으로 법 제정에는 동의한다」고 밝힌 뒤 「선진국에서도 80년대말이나 90년대초에 주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사회적 여건이나 인식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나 사회전체가 부담할 부작용을 감안해 입법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겨례신문, 94.6.30, 10면>>.

○ 하종선(현대자동차 상임고문변호사)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에도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어야 마땅하지만, 결합제품을 내놓지 않으려면 제품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조선일보, 1994.6.28, 11면).

○ 전윤철(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소비자보호 관련법은 전반적인 국민의 의식수준과 함께 가야하는 것인 만큼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이 다소 시기상조라는 느낌은 있으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1994.6.28, 11면).

〈반대론〉

○ 최경선(대한상공회의소 이사)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이들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무게나 중요성을 무시,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 경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절대로 소비자에게 손해(피해) 입히려고는 안한다. 왜 중소기업의 도산을 불러올 이런 입법을 시도하려고 하느냐. 제조물 책임법은 안전성 문제만 다루는 것인데 안전에 관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 말고도 관련 법들이 있다.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과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제조물 책임법을 도입하여 중복시킬 필요가 없다.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우선 사고 예방 대책비용의 증가, 사후 claim이나 사전 claim 회피를 위한 방어비용의 소용 등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다음으로 제품 개량 노력 · 신제품 개발의 절제 효과를 가져와서 기업의 개발의욕이 감퇴하여 신기술 개발이 안되게 된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에 관한 입법 자체를 반대한다.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1994년 6월, 한국 소비자 보호 원세미나, 토론).

○ 장창덕(삼성전자 이사)

솔직히 이 법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고객의 책임인지 제조업체의 책임인지를 가릴 수 있는 판단기관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제조업체가 비합리적인 부분 까지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110볼트, 220볼트 등 전압 사용 실수로 인해 생긴 피해는 제조업체가 책임져서는 안된다(조선일보, 1994.6.28, 11면).

○ 장용진(금성사 서비스기획관리실장)

경제 대국인 일본도 이제야 도입하는 상태다. 다국적 대기업은 영향을 적게 받겠지만,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조선일보, 1994.6.28, 11면).

〈〈입법례〉〉

-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포르투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92. 10.9성립, 시행일 미정), 리히텐스타인(93.1.14제정, 시행일 미정), 프랑스(법률안 심의중(양원협의회안)), 스페인(법률안 작성중),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중국, 일본(1994.6.16, 1994.6.22 양원통과: 1년후 시행)

2. 입법체계 및 입법형식

○ 강창경(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

제조물책임법리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민사법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그 법의 성격, 이념 및 내용에서 볼 때 이는 소비자보호법의 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또는 상법의 내용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의 성격과 내용 및 발전 방향에서 볼 때에는 제조물책임규정을 소비자보호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입법형식에서는 결합상품에 의한 민사피해구제의 내용을 그 특질에 비추어 다양하게 구성하려면 이를 단행특별법으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강창경,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1994년 6월 27일), 주제발표, 13쪽).

○ 배병휴(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제조물책임법은 그 입법취지와 우리나라 실정법 체계상 소비자보호관련법 체계에서 입법되어야 한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 토론).

○ 양창수(서울대 법대 교수)

제조물책임법은 확대손해까지 배상하는, 소비만이 아니라 제조·유통과정도 포함한 기업활동이 관련되는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을 소비자보호법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 토론).

〈〈입법례〉〉

- 특별법형식의 법제정이 세계적 추세.
- 영국: 소비자보호법 내에 규정되어 있음.
- 네덜란드: 민법전내에 규정되어 있음.
- 중국: 민법전 내에 규정되어 있음.

3. 무과실책임의 도입문제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무과실책임원칙론〉

○ 전창조(동아대 법대 교수)

어느 법리에 의하거나 그 궁극적 목적은 무과실책임의 실현과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 책임주체와 손해배상의 범위의 확대에 있다……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공해법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무과실책임을 토대로 피해유형이 유사한 제조물책임분야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무과실책임론이 정립될 것이 예상되며 공해법질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사회법질서로 발전될 것이 전망된다(전창조, “소비자보호의 사법적 법리에 관한 연구-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아카데미논문집 제5집 (1977.12), 219쪽).

○ 김형배(고려대 법대 교수)

판례의 이론구성인 제조자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일반불법행위책임은 형식적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을 과실과는 관련없는 책임 내지 위험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솔직한 방법이다(김형배(1990),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합의 개념과 책임규칙”, 성현황적인박사화갑기념「손해배상법의 제문제」, 422쪽).

○ 정만조(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이를 법리상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거나 그 무과실책임을 위한 입법화가 세계적 경향이고 이는 그 기저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사고와 제조자의 보상책임의 원리가 그 철학적 기초를 이루는 한편 오늘날의 상품의 대

량생산 및 대량판매, 소비의 경제체제하에 있어서의 제조자에 대한 (이윤추구보다는 그 상품을 통상적 용도에 있어 안전하게 제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적 요구를 전제로 하고 그 결함상품제조에 대한 제동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아직 이러한 무과실책임적 구성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우리나라로 이미 상품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 소비의 경제체제를 이룩한 오늘날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무과실책임을 위한 입법의 길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정만조, “제조물책임 -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적 구성과 그 증명문제를 중심으로 -”, 「사법논집」 제9집(1978), 149-50쪽).

○ 홍천룡(경남대 법대 교수)

무과실책임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창조적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의 거래관행(rule)의 성립을 촉진하는 것이 되므로 여기에 소비자피해구제의 현대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홍천룡(1993), “제조물책임”,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민사법학회, 738쪽).

○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의 입법화를 생각하는 경우 그 골격을 구상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조합을 상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① 결합제조물의 제조자의 과실추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과, ② 결합만 인정되면 제조자의 고의·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바로 책임을 지우는 방법의 2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그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서 전자는 그동안 판례 등에서 발전되어온 사실추정의 원칙을 조문화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며 적극적 채권침해와 비교해 볼 때도 균형이 맞는 방법이다. 그러기는 하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입법을 한다는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과실의 항변이 인정됨으로써 피해자구제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제조물책임에서 문제되는 상품의 결함은 제조자의 주관과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입증책임이 제조자에게 전환됨으로써 설사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론으로서는 쓸 데 없는 우회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법에 있어서 대세를 점하고 있는 무과실책임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무과실책임에 근거한 입법론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용한, 한봉희, 홍천룡, 임정평, 이은영, 편지원, 연기영 등 제교수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67-8쪽.

○ 김광년(변호사)

무과실책임을 도입해도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례는 현 실적으로는 과실책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가깝고, 따라서 제조물 책임이 다가가려는 무과실책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 중간책임론 〉

○ 홍춘의(전북대 법대 교수)

제조물책임의 성격은 책임이 포섭하는 손해의 종류나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 하느냐에 의해서도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임요건인 결합개념의 구성여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과실책임에 접근하고 있다. 제조상의 결합의 경우에는 순수한 무과실책임이 타당하지만, 그러나 설계상의 결합이나 지시·경고상의 결합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적인 판단 요소가 고려되는 것이 부득이 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은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공작물책임의 법적 성격과 유사하며, 공작물책임에 있어서 하자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을 일원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홍춘의(1993),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합개념," 「재산법연구」 10권 1호, 56면).

〈〈입법례〉〉

- 우리나라에서 ①1982년 2월 19일 의안제231호로서 제110회 임시국회에서 제안·상정된 바 있는 제조물책임법안 제3조에서도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연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②1989년의 한국소비자보호원 시안 제3조에서도 무과실책임을 채택.

- EC지침 제1조에서 무과실책임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가입국들은 무과실책임에 입각하여 국내법을 조정하였고, 미국의 1965년의 Restatement (2d) of Torts §402A에서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였는데 그 정책적 근거를 다음과의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 ①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조자의 과실을 배심으로 하여금 인정토록 함으로써 과실책임법리에 의한 우회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②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 또는 과실책임을 과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자극이 된다는 것, ③성능과 생산코스트가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므로 제조자는 침된 사회적 코스트를 제품의 가격에 반영하게 되므로 자원의 적정분배에 기여한다는 것, ④제조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손실은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제품의 매수인사이 또는 시장의 상태에 따라 제조자 자신과 중간업자 사이에 분배된다는 것, 그리고 ⑤제조물의 업격책임은 현대사회의 윤리개념에 합치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 아직 정책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고, 법적 근거로서 민법상으로는 책임무능력자의 책임(민법 제755조),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7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동물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등이고 특별법으로는 광업법 제9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수산업법 제82조이다.

4. 제조물의 범위

1) 제조물 일반

○ 강창경(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

법적용대상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과 부동산 중 대량공급주택으로 한다(강창경(1994), 앞글, 16쪽).

〈〈입법례〉〉

- 1982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2조에 의하면 「제조물이라 함은 완성품 · 미완성품 및 자연산물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통과정에 있는 모든 물건은 말한다. 단, 제1차 농업생산물, 수공업품 또는 예술상의 제조물로서 공업상 제조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을 제조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시안 제2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1차 농산물이란 농업, 목축업 및 어업에 의한 산물을 말한다. 다만, 제1차 가공이 되어진 것은 제외한다. 제조물에는 전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1982)는, 완성품 · 미완성품을 불문하고 모든 물건을 제조물에 포함하고 있으나, 미가공농수산물, 수공예품 · 예술작품으로서 공업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 물건을 제외하고 있다. 후자(1989)는, EC지침의 입장과 근사하며, 제조물에 모든 동산 및 전기를 포함하나, 미가공농수산물을 제외하고 있다.
- EC지침 제2조:본 지침에 있어서 「제조물」이란, 제1차농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하여, 모든 동산을 말하며, 그것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1차농산물」이란, 제1차가공을 한 제품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제조물」은 전기도 포함한다.
제1차농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 및 전기를 제조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옵션으로 하고, 각加盟국의 판단에 따라 제조물포함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1994년 일본제조물책임법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제조물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경우

〈적극적 입장〉

○ 강창경(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

부동산 중 대량공급주택을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동산 중 대량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급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공급받는자가 일일이 그 결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대량주택의 범위는 충분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강창경, 앞글, 16쪽).

○ 배병휴(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부동산 중 대량공급주택을 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집단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량공급주택이 아닌 개인주택도 법이론에 큰모순이 없는 한 포함시켜서, 결국 「주택」을 대상제조물로 인정하여야 한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입법례〉〉

- 1982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2조 1항: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완성품·미완성품 및 자연산물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통과정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단, 제1차 농업생산물, 수공예품 또는 예술상의 제조물로서 공업상 제조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여기에서 제외된다. --- 일반의 부동산과 미가공의 부동산을 제조물에 포함하는 입법임.

〈소극적 입장〉

○ 양창수(서울대 법대 교수)

대량공급주택은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게 좋겠다. 이는 건축관련법으로 해결하면 된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 김광년(변호사)

부동산 중 대량공급주택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주택은 많은 제조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책임주체특정문제가 생기게 되어 건축업자에게는 설계상 시공상의 책임밖에 물을 수 없는데 이는 기존의 법체계로써도 가능하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 토론).

〈〈입법례〉〉

-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시안 제2조제1항--부동산 불포함
- EC지침 제2조--부동산은 제조물에 포함시키지 않음
- 1994년 일본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항--부동산 불포함

3)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의 경우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것은 제조물의 가공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비자보호 특히 수입농산물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조물에 제1차 농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농민의 위험분산능력 및 배상능력부족, 농산물의 경우 책임소재의 불분명, 대다수의 국가에서 소극적인 점 등에 비추어 우선은 이를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한국소비자보호원(1989), 앞글, 85쪽).

〈〈입법례〉〉

- 1982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2조제1항과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1항은 제1차농산물을 제외함.
- EC지침 제2조는 제1차농산물 및 수렵물을 제조물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이를 옵션으로 하여 각 가입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4) 제조 · 가공된 동산의 경우

○ 양창수(서울대 법대 교수)

제조 · 가공된 동산을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대통령령 등에서 예외인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했으면 한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입법례〉〉

- 일본의 제조물책임법(1994년) 제2조:이 법률에서 「제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5) 신체의 일부나 장기 · 혈액의 경우

수혈된 혈액이 간염 바이러스나 AIDS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있는 경우에 혈액이 제조물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 홍천룡(경남대 법대 교수)

전혈액이 아니고 일부성분의 추출 · 혼합이 행하여지는 혈액製劑의 경우에는 가공품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므로 제조물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홍천룡(1993), 앞글 729쪽)

〈〈입법례〉〉

- 미국 : 1990년 5월 22일 상원통상위원회에서 가결된 Kasten법안(s 1400)에서는 제조물에는 육체의 조직, 혈액, 혈액제품, 器官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02조제13호).
- 독일 : 제조물책임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육체의 일부나 장기 · 혈액도 동산이지만 경제적 목적의 제조 · 판매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공한 자는 면책된다며 규정하고 있다.

6) 전기 기타 에너지의 경우

○ 강창경(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급규정상 전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제조물과 같이 현행민사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지만 현행 민사법체계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제조물책임의 원칙을 무과실책임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전기도 포함되는 것 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98조), 동산을 부동산이외의 물건이라고 규정(제99조)하고 있으므로 전기는 당연히 동산의 일부로 본다(강창경(1994), 앞글, 요약집, 7~8쪽).

〈〈입법례〉〉

- EC지침 제2조는 제조물의 정의 중에 전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종래부터 에너지를 동산으로 취급하는 가입국과 포함시키지 않는 가입국 도 있기 때문에 제조물로서 명확히 하는 데 있다.

5. 책임론

1) 결합개념

○ 이은영(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합이란 제조물의 통상 예견된 사용에 있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제조물의 하자를 말한다. 하자는 상품성의 결여이지만 결함은 안전성의 결여이므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나, 결함은 상품의 사용에 의하여 하자야기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하자이므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의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하자야기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제조물의 결함은 상품에 존재하는 하자 자체로 인한 상품의 가치감소 또는 사용

상의 부적합의 손해 이외에 그로 말미암아 재산·인체상의 손해를 야기할 정도의 하자를 가리킨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자와 결함은 책임요건충족을 위한 개념상의 구별일뿐이며, 실제에 있어서 엄격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흠이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이은영(1989년), 앞글, 682~3쪽).

○ 김동훈(국민대 법대 교수)

결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의 결여로 볼 수 있고, 거래계에서 제품의 상품성 내지 품질의 결여를 나타내는 하자와 구별된다(김동훈(1994), “제조물책임의 입법론적 고찰”, 「고황법학」 제1권, 142쪽).

○ 홍천룡(경남대 법대 교수)

결함이라 함은 단순히 상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품의 사용에 의하여 하자야기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하자라고 말할 수 있다.

결함과 같이 불확정한 개념은 그 적용에 있어서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의 모든 사정이 그 불확정개념 중에 포함된 가치판단과의 관계에서 상호형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함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제조물책임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결함이 책임을 수반하게 되느냐의 여부는 위험의 크기 및 개연성, 피해자의 수, 위험에 따른 법익의 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홍천룡(1986),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제조물의 결함,” 「경희법학」 제21권 제1호, 178쪽).

○ 홍춘의(전북대 법대 교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책임요건인 결함은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여로부터 야기되어 발생한 제3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확대손해(하자야기손해)가 문제로 된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과 공작물책임에 있어서의 하자는 물건의 안전성에 관련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홍춘의(1993), 앞글, 40~41쪽).

○ 김형배(고려대 법대 교수)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하에서는 전통적인 결함의 유형, 예컨대 설계상의 결함, 제조과정상의 결함, 설명·경고상의 결함 등은思考의 보조수단 내지 이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통일적 조직체로서의 기업 전체에 대한 고찰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김형배(1990), “결함의 종류와 그 법적 처리”, 「한독법학」, 제8호, 247쪽).

○ 강창경(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이란 일반인이 그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한다(강창경(1994), 앞글, 17쪽).

〈〈입법례〉〉

- EC지침(제6조제1항) 등: 제품의 표시, 제품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용도, 제품의 유통시점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에, 사람이 정당(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결함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인이 그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
- 1982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2조제3항: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이 통상 예견된 사용에 있어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불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제조물의 하자를 말한다.
-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시안 제2조제3항은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안전성의 결여를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 미국 불법행위법 제2차 Restatement 402A: 제조물의 결함이란 제조물이 이용자, 소비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함상태란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소비에 있어서 예기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그것이 최종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부당한 위험이란 상품의 성질에 관하여 공동사회에 공통된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상품을 구입한 통상의 소비자가 예기하고 있는 정도를 넘는 위험을 말한다.

2) 입증책임의 경감문제(결합, 결합과 손해의 인과관계의 추정)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지는데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결합,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원고인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한 현행제도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결합의 존재와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경우를 특정하는 것은 의연 어려운 일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앞글, 87~88쪽).

○ 이은영(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피해소비자의 결합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조물이용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사회경험측상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곧 결합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된다면 원고는 결합존재의 추정을 받기 위하여 세부적·기술적으로 어디에 어떠한 결합이 있었는가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용법대로의 사용이나 그 밖에 통상 예견되는 사용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피고는 사고원인이 된 제조물이나 다른 동종의 제조물을 조사분석하여 결합의 부존재를 증명하거나 또는 원고나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결합이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즉 제조물이 피고의 손을 떠났을 때 이미 결합이 있었는가 어떤가를 결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사고발생시에 존재한 결합은 피고가 반증하지 않는 한 상품이 제조자의 지배를 벗어날 때 존재한 것으로 추정될 것이 요구된다. 그렇게 된다면 손해를 발생시킨 결합이 제조물의 출하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제조물의 유통 이후에 생겼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된다(이은영(1989), 앞글, 686-7쪽).

〈〈입법례〉〉

- 1982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5조제1항은 「제조물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가 적정한 사용에 의하여 통상 생길 성질의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손해의 발생당시 존재한 제조물의 결함은 상당한 사용기간내에는 제조물이 제조자의 지배를 떠날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의 결함존재의 추정을 인정하며, 또한 동법 제6조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시안 제5조제1항은 「제조물을 통상 예견되는 방법으로 사용, 보존,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손해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또 제2항에서 「손해의 발생당시 존재한 제조물의 결함은 상당한 사용기간내에는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켰을 때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결함의 존재의 추정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하여 원고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 EC지침 제4조: 「피해자는 손해, 결함, 결함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추정을 배제하여 피해자측에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3) 책임주체(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와 연대책임문제

배상책임의 주체 - 공급자(판매자)의 책임문제

〈긍정론〉

○ 이상정(울산대 법대 교수)

완성품인지 원재료인지 부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물건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기를 제조자로 표시한 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물을 수입한 자도 제조자로 간주하며,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각각의 판매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이상정(1990),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방향”, 「손해배상법의 제문제」, 박영사, 480쪽).

○ 이은영(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결함있는 제조물의 생산·유통에 관여한 자이다. 이들은 크게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 분류하여, (1)제조업자는 완성품의 제조자 또는 상품권자(표시제조자)가 되며, 그 밖에 부품제조자나 원료제공자도 제조물의 결함이 그 부품이나 원료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유통업자에는 도매상·소매상·수입업자 등이 포함되는데, 단순히 제조자로부터 완제품을 받아서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팔았을 뿐으로 제품의 결함의 존재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의 책임이 면제됨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는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수입업자는 외국의 제조자를 대신하여 국내시장의 상품판매의 총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국내소비자에 대하여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이은영(1989), 앞글, 687~8쪽).

○ 강창경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

제조물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자는 결함상품의 제조자이다. 그러나 현대고도 산업사회에서는 제품생산 및 유통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함제품의 제조자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도록 한다면 제대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결함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용이한 구제를 위하여 책임부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관법리에 따라 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를 부착함으로써 자기를 제조자로 오인하게 한 자도 제조자에 포함시켜야 하고, 부품제조자나 원료제공자는 제품의 결함이 그 부품이나 원료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입업자는 외국의 제조자를 대신하여 상품판매의 총책임을 지는 자일뿐만 아

나라, 국내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함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급업자는 일차적인 책임주체인 제조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강창경(1994), 앞글, 18쪽).

○ 배병휴(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법이론에 마찰없다면 제품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자를 책임주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 토론).

〈부정론〉

○ 김광년(변호사)

제품의 제조자를 알 수없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에게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들에게는 면책할 수 있는 정보수집능력 등이 없어서 면책주장이 심히 어렵기 때문이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 이용한(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수 많은 유통단계구조속에서 어느 한 유통과정의 관리소홀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책임부담주체의 문제는 유통산업의 발달과 결부시켜 생각해야 한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 토론).

〈연대책임의 인정〉

○ 한국소비자보호원

제품생산에는 다수의 제조사업자가 관여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이 그 생산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고, 또 배상능력도 사업자에 따라 다르므로 소송에 있어 피고특정의 곤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법 제760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함제품의 생산 판매에 관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도 손해액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연

대책임의 원칙이 바람직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1989), 앞글, 83쪽).

○ 이은영(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련된 다수의 배상책임주체가 있는 경우에 그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의 적용을 받는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각자의 관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들의 관계는 구상권의 행사에 의해 정리된다(이은영(1989), 앞글, 688쪽).

<<입법례>>

- 1982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2조 2항은 제조자를 제조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의 상표 및 표장 또는 상호나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부쳐서 이를 유통시킨 자,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판매업자·임대업자, 운송업자·창고업자, 수리업자에게도 일정한 경우에 제조자와 같은 책임을 인정한다.
- 1989년 시안 제2조제2항(제조자)은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자 및 제조물에 그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제조자이외의 자의 책임)에서는 판매, 리스등 반포를 위하여 업으로서 국내에 제조물을 수입한 자와, 그리고 제조물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제조물의 판매에 관여한 자를 제조자로 보고 있다.
- EC지침: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자 및 제품에 그 성명·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모든 자, 판매, 대여 기타 유통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내에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자,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수입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각각의 공급자(EC지침에서는 동산으로서의 완성품·부품·원재료의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로 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는 다른 자가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조자인 것처럼 결합제품에 표시한 자(표시제조자) 및 매매·임대·리스 그 밖의 배포의 목적을 위한 영업활동으로서 제품을 EC역내에 수입하는 업자는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제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결합제품의 공급자가 제조자와 같이 취급된다고 하고 있다).

- EC지침은 부품의 결함이 완성품의 제조자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및 완성품의 결함이 완성품의 구조에 있는 경우에는 부품제조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f)).
- 미국의 경우 Restatement402A나 UCC§2-314①에 의하든 간에 제조물책임은 매도인에게 과하는 책임이다. 그러므로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진다.
-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우리나라의 1982년 법안 제2조 2항 3호와 EC지침 제3조 1항과는 달리 제조자와 판매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판매자의 상표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조자의 기재가 있다든지 제조자의 상표 등도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만이 제조물책임을 진다.
- EC지침 제5조, 1982년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4조, 1989년 한국소비자보원 제조물책임법 시안 제4조에서도 연대책임을 택하고 있다.

5. 손해의 배상

1) 손해배상의 범위

○ 양창수(서울대 법대 교수)

제조물책임은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손해를 그 배상범위로 하는데, 구체적 재산에 대한 손해이외의 경제적 손해까지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입법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 토론).

〈〈입법례〉〉

- 1982년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2조 4항: 이 법에서 '손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신체상해

2. 결함있는 물건이외의 재산의 훼손 또는 멸실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 가. 개인의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취득한 물건에 의한 손해일 것
- 나. 피해자가 거래·영업 또는 직업을 위해서만 취득했거나 사용된 물건에 의한 손해는 이를 제외한다.

3. 위자료 및 비재산적 손해

2) 책임한도액 및 면책액

○ 강창경(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

배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인정하는 데에 반대한다. 집단소송시 나중소송참여자에게는 뜻이 없을 수 있다는 점, 일단 법에 정액을 정한 후엔 다시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 주제발표).

○ 양창수(서울대 법대 교수)

손해배상의 한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 토론).

〈〈입법례〉〉

- 책임한도액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와 한도액을 보면, 그리스 72억384드라크마, 포르투칼 100억 에스库트, 독일 1억6천만 마르크, 스페인 100억 폐세타, 아이슬란드 7천만ECU상당이다.
- 독일에서는 제조물책임법, 민법, 약사법 각각에서 책임한도액 및 면책액이 다르다. 배상책임한도액은 약사법(2억마르크)과 제조물책임법(1억6천마르크)에서 규정하고 있고, 1인당한도액은 약사법(50만마르크)에서, 면책액(물적 손해)은 제조물책임법(1,125마르크까지는 피해자부담)에서, 위자료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기간제한

○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효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이나 민법 제766조나 EC지침 제10조, 미국판례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한편 제조자의 법정책임기간을 몇년으로 할 것인가도 커다란 문제이나 민법 제766조나 EC지침 제11조, 미국 통일모델법 제110조 등에 비추어 10년이 온당하다고 본다. 제품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는 기업책임과는 별도의 사회적 책임 내지는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1989), 앞글, 93쪽).

○ 강창경(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

피해자가 손해발생, 결함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제조자가 손해를 야기한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도록 한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제품은 구식이 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안전기준이 요구되고 과학·기술의 수준은 계속 발전하여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품개발 당시의 기록, 제조당시의 기술수준 등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크다. 이로써 제조자의 방어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책임추궁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어 합리적인 제품개발계획이나 경영계획의 수립이 어렵게 되는 등 제조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강창경(1994), 앞글, 20~21쪽).

○ 양창수(서울대 법대 교수)

우리 민법에는 이미 3년, 10년의 규정이 있다. 기업활동을 위해 좀 더 단기로 해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입법례〉〉

- 1982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9조제1항, 제2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경과하면 시효완성.

- EC지침 제10조: 손해, 결합 및 제조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의 제한 기간.
-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5조: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제1항). 체내 축적물질 또는 잠복성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시효(제2항).

4) 특약에 의한 사전면책 · 책임제한의 금지

○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자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이 사전면책조항이나 제한조항에 의해서 면책 또는 제한되게 된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의도하는 소비자보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한국소비자보호원(1989), 앞글, 94쪽).

○ 강창경(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

면책특약이나 책임제한특약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일반소비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특약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면책특약 등을 인정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배제시켜 제조물책임법을 강행법화하여야 한다(강창경(1994), 앞글, 20쪽).

○ 김광년(변호사)

개별계약약관이 아니라 일반 보통약관에서만 금지조항을 갖는 것이 좋겠다(1994년 6월, 한국소비자보호원세미나, 토론).

⟨⟨입법례⟩⟩

- 1982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8조: 생명 ·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특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
- 1989년 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시안 제9조: 본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 EC지침 제12조: 본 지침에서 제조자책임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책임제한 또는 책임면제항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없다.

6. 손해배상의 이행확보와 절차

1)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강제여부

○ 한국소비자보호원

보험인수상의 어려움도 있어 보험회사에 계약체결의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하나 무분별한 보험인수의 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거부사유를 엄격화하여야 하며, 기업에 대해 모든 제품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품의 특성(위험발생빈도 등), 기업의 상황, 손해액의 규모에 따른 인수상의 문제에 따라 다양한 이행확보방안 중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배상이행확보방안의 운용에 있어서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앞글, 114쪽).

○ 이상정(울산대 법대 교수)

제조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자 등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다든지 혹은 파산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손해는 전보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보험 등 배상이행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문제는 손해배상조치가 필요한 제조물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구체적인 상품의 성질에 따라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상정 (1990),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방향”, 「한독법학」, 제8호, 353-4쪽).

○ 홍천룡(경남대 법대 교수)

소비자피해가 현실적으로 구제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제조자나 사업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기업책임의 엄격화만을 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동시에 사업자의 배상이행의 확보를 제도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상법 제719조 참조).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사업자

의 배상이행을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제조물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홍천룡(1993), 앞글, 745쪽).

○ 김동훈(국민대 법대 교수)

강제책임보험의 도입은 일반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우선 위험발생 가능성 및 다액의 손해발생가능성이 높은 일부 제품들(예컨대 가스나 열기구, 화약류, 총포 등)에 한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김동훈(1994), 앞글, 158쪽).

〈〈입법례〉〉

- 1982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안 제12조 : 법령에 정한 제조물의 제조자 중 법령으로 정한 자는 그가 생산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생명·신체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강구하지 않으면 그 제조물의 유통과정에 두지 못한다.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에는 제조물책임 보험계약·제조물책임보통계약 또는 공탁에의 강제가 있음.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시안 제12조도 동일함.
- 또한 1982년 법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국가에 의한 제조물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집단소송의 문제 등 구제절차의 개선

○ 이상정(울산대 법대 교수)

한 피고와 한 원고를 대립시키는 전통적인 소송형태는 결함있는 상품의 대량 판매가 야기한 지역적으로 분산된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구제제도로서는 극히 미흡하다. 피해자의 일인이나 수인이 전체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적절성 여부의 심사를 거쳐 그 판결의 효력을 피해자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소위 class action)의 도입없이는 피해자전원의 구제, 피해전부의 원활한 구제는 달성될 수 없다. 이러한 제도가 민사소송법에 도입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개개분쟁의 특성에 비추어 우선 개별법분야에서 민사소송법의

예외적 형태로 서서히 도입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이상정(1990),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방향”, 「한독법학」, 제8호, 353~4쪽).

○ 홍천룡(경남대 법대 교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도 공해소송이나 약해제조물 책임, 소비자보호소송 등 다수의 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수당사자소송을 충분히 예정하지 못하였던 현행 민사소송법이론으로는 그에 대한 만족한 대처를 할 수 없다. 소비자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소송이나 class action제도를 입법론 내지 해석론으로서도 그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민사소송법제도는 소액의 소비자피해구제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므로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를 개선하거나 간이재판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홍천룡(1993), 앞글, 745~6쪽).

○ 김동훈(국민대 법대 교수)

피해자의 1인이나 수인이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을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의 발생모습은 다양하므로 이를 제조물 책임법에 끌어들이는 것은 어렵고 별도의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을 기다려야 하리라 생각한다(김동훈(1994), 앞글, 159쪽).

○ 법무부

늘어나는 사회구성원의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 오는 7월까지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가칭)의 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조선일보, 94.5.21, 27면).

〈〈입법례〉〉

-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 책임법시안 제15조(대표당사자소송)

제1항: 제조물의 동일한 결함으로 인하여 다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 중의 1인 혹은 수인은 법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 전원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소의 확정판결은 제외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 전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

III. 입법방향

1. 쟁점사항의 정리·평가

1) 제조물책임의 입법여부에 관한 문제

이에 대한 태도는 ①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중요한 것은 입법기술·내용이라는 입장, ②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 ③입법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선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은 입법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에 있다. 그 외는 제정시기나 적용대상·책임범위 등에서 의견차이를 보이나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 즉, 법제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제정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경감시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도적이다. 소극적 입장의 근거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생산비용의 증가와 소송의 남발로 인한 부작용에 있고, 일면으로는 안전성 확보의 문제와 제조물책임의 인정을 통한 소비자의 보호를 혼동한 데에도 있다.

2) 입법체계 및 입법형식

우선 법의 성격, 이념 및 내용에 비추어 민사특별법체계로 해야 된다는 입장과 소비자보호법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체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조물책임법리가 현대의 대량생산·유통·소비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민사법의 책임원칙을 수정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

면에 민사특별법체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은 소비만이 아니라 제조·유통이라는 기업활동까지 관련되는 것이므로 소비자보호법체계에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입법형식에 있어서는 단행법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와 기존의 민법전이나 소비자보호법(또는 관련 개별법)에 새로운 제조물책임의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의 성격과 내용 및 발전방향에서 볼 때에는 제조물책임규정이 소비자보호법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결함상품에 의한 민사피해구제의 내용을 그 특질에 추어 다양하게 구성하려면 단행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3) 무과실책임의 도입문제

이는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로서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를 제조자의 과실에서 찾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제조물책임을 아예 과실과 단절된 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하려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그 이론적 근거도 위험책임 내지 배상책임을 들고 있다. 중간책임으로 구성하려는 견해도 결합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제조상의 결합은 무과실책임으로, 그밖의 결합은 과실책임적인 판단요소가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종래의 과실개념에서 벗어나 결합의 개념구성에 의존하는 점은 다를 바가 없다.

4)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제조물」의 개념 속에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논란이 있는 부분은 ①동산 중에서 제1차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 ②부동산, ③신체의 일부나 장기·혈액, ④전기 기타 에너지, ⑤그밖에 의약품·중고품·폐기물 등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법적 체계와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민사특별법의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과 그 「가공성」에 따르게 되나, 소비자보호법의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조적 피해의 구제라는 목

적성에 의존하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물로 보지는 않으나, 대량 공급주택은 소비자보호법체계를 택하는 입장에서는 포함시키고 있다. 신체의 일부나 장기·혈액등은 성분의 추출 또는 혼합이라는 가공을 거친 것을 제외하고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전기 기타 에너지는 동산인 점에서 포함시키고 있다.

쟁점의견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중고품을 신제품과 구별하지 않고 대상에 포함하며, 폐기물은 상품성을 상실한 점에서 제외하고 있고, 의약품은 특별법 내지 특별규정으로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품·수공예품 등은 공업적 가공성 내지 제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제조물로 보지 않는 견해와 공업적 제조물과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5) 책임론

①제조물책임의 핵심을 이루는 안전성 개념과 관련하여 통설의 입장은 결함과 하자를 구별하는 데에 별 이의가 없다. 물론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개념상의 구별이며 실제상으로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제품의 상품성 내지 품질의 결여를 '하자'로 보고, 제품의 안전성 결여를 '결함'으로 보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

②결함의 추상적 개념성 때문에 이를 유형화하여 고찰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하나의 예시적 분류로 보고 있을 뿐이다. 결함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이의 추정을 인정하여 제조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피해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결함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자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제조물이 통상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서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그 결함의 발생시기와 단계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점, 종래의 계약관계에서 볼 때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유통과정상의 관련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임

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결합상품의 제조자가 책임주체로 둠은 당연하나, 결합상품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쉽게 하기 위하여 그 책임부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제조자의 범위에 상품권자인 표시제조자도 완성품의 제조자와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하며, 부품제조자, 원료제공자도 제조물의 결함이 그 부품이나 원료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제조자 이외의 자는 어느 범위에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국내소비자에 대하여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공급업자 내지 유통업자는 책임주체인 제조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유통과정 중의 한 단계에서 관리소홀로 결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유통산업의 발달과 결부시켜 생각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있다.

각 책임주체는 각각 피해자에 대하여 전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④그 밖에 제기된 문제로 개발위험의 항변에 의한 책임의 면제가 있다. 개발위험의 항변은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결함을 판단하는 경우의 문제가 아니고, 결함의 존재가 인정된 후의 문제이다.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할 근거로서, 이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첨단연구개발이나 기술혁신이 저해될 가능성, 제조자에 대한 심리적인 악영향, 보험가입이 곤란하게 될 사태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이 항변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사 항변이 인정되는 분야를 한정한다 해도,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화하는 의의가 삭감된다고 보는 반론도 있다.

6) 손해의 배상

①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 재산에 대한 손해 이외에 경제적 손해 까지 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책임의 최고한 도액 설정에 관하여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는 무과실책임과 소비자의 보호

라는 측면과 제조자 측과의 형평성 문제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②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행사기간의 제한 문제는 기업의 활동보호라는 측면, 안전기준과 과학기술 수준의 계속 발전성, 제조당시의 기술수준 등에 관한 증거의 소멸우려, 제조시점과 손해발생시점 사이의 장기화 문제 등에 관련된다. 즉, 구체적 타당성으로서의 소비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으로서의 기업활동 보호라는 양자의 조화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로 된다고 하겠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인정하되, 그 이후의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 내지 국가적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은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의견이고, 단기로 단축하자는 견해는 기업활동보호를 위한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다. 장기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로 하는 견해와 제작기간으로 하는 견해로 나뉜다.

③특약에 의한 사전면책·책임제한의 문제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으로는 이를 법적 강행규정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보통약관에서만 금지조항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7) 손해배상의 이행확보와 절차

배상이행의 확보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보조치가 필요한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보험의가입강제에 관하여는 탄력성을 부여하여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구체적인 구제절차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속한 구제와 다수의 피해자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민사소송법상의 구제절차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개별법분야에서 민사소송법의 예외적 형태로 도입하자는 견해와 현행 소액사건 심판제도 내지 간이재판제도의 정비나 개선과 병행하여 입법론 또는 해석론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화하는 의견도 법무부에서 계획 중이다.

2. 입법방향

상품에 존재하는 흔 중에서 상품적합성을 결여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하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제조물책임법리이다. 제조물책임법리가 하자담보책임법리와 대비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이다. 즉, 하자로 인한 직접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결함으로 인해 야기된 확대손해가 문제로 되는 점, 피해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라는 점, 책임주체가 계약당사자외에 제조자나 공급자 등 다수의 가해자의 상호책임관계가 문제되는 점, 상품생산 및 유통이 고도기술, 다단계, 기업비밀로 말미암아 제조물의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단지 자기에게 발생한 피해가 상품의 결함에 연유한다는 사실만을 밝힐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연유로 과실의 입증책임을 통한 통상의 불법행위책임원칙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여기에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입법화는 그 귀책근거가 종래의 과실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책임 내지 보상책임에 있고, 따라서 그 결함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측 아니면, 제조자측에 부담시킬 것인가 하는 보호대상 문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경제적 정책결정의 문제로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어떤 요건 아래 어느 범위까지 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제조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법경제학적 고려를 기초로 한 정책적 배려도 행하여 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된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을 정리·분석한 결과와 여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시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방향과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체계(법적 성격)를 민사특별법으로, 아니면 소비자보호법체계에 속하는 것 중 어느 쪽으로 파악하느냐, 입법형식은 별도의 단행법이냐, 민법이나 상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의 일부로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법경제학적 고려에 기초한 정책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의 배경 자체가 소비자의 보호에 연유하면서 아울러 현재의 경제생활과 소비생활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다단계의 유통관계를 특색으로 하는 점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려면 민사특별법으로서 별도의 단행법으로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의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서 전면적으로 수정된 무과실책임을 독립된 하나의 책임원칙으로 확립시키기에는 아직 민사법의 책임체계상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원칙이 하나의 독립된 민사책임원칙으로 제조물책임뿐만 아니라 그밖의 무과실책임영역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사법체계를 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제조물책임의 기본원칙은 제조자의 고의 ·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결함을 중심적인 책임요건으로 하여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된다. 이 원칙 하에서 제조물의 범위와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 및 결함의 정의가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중 대량공급주택으로 한정하는 입장도 고려할 만하나, 부동산은 계약당사자의 단절을 일으키는 유통구조가 드물기 때문에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는 원재료 · 부품 · 완성품의 제조자는 물론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가 원칙적인 경우이고,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적인 경우로 수입업자,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 등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간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적인 책임요건인 결함의 정의는 일반인이 그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나,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 · 소비에 있어서 예기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그것이 최종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부당한 위험이란 상품의 성질에 관하여 공동사회에 공통된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상품을 구입한 통상의 소비자가 예기하고 있는 정도를 넘는 위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입법상 결함의 유형화를 행할 것인가가 문제되나 이는 발전하는 과학기술수준의 현상을 보아 탄력성을 부여하는 일반적 규정을 두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시적인 유형화로써 해석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결함과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피해자인 소비자는 결함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며, 사실상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자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특정한 분야의 경우에는 인정하여, 유통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 알 수 없는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4) 손해의 배상은 얼마만큼 실효성있게 피해자에게 보장되는가가 관건이다. 제조물책임의 근본 취지 중의 하나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며, 특히 다수의 불특정피해자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도 하므로 절차적 요소도 중요한 문제이다. 반면에 제조자의 일방적인 회생을 기반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책임의 한도나 면책액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 형평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법체계로 하는 한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상액의 최고한도 설정은 법리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인 만큼 현실적인 정책적 배려로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제조물책임보험의 완비여부와 기업의 자산력에 상관된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입법화에 따라 국가경제는 물론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약에 의한 사전면책·책임제한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율하지 않더라도 보통약관규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일 것이다.

5) 손해배상의 이행확보와 그 절차는 제조물책임의 입법목적과 직결된다. 즉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에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제조물책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당사자인 소송절차에 유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물책임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여려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며, 피해자의 경우도 이행의 확보 차원에서도 책임재산의 부족이라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를 강제가입하게 규정을 둘 것인가가 문제이다. 기업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탄력성을 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용에 효율적일 것이다. 배상이행확보조치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가입률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한 방책으로서 단체가입방식의 활용이 있다. 단체가입방식은, 간이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특히 중소·영세기업에게는 충분한 매리트를 갖는다.

제조물책임의 입법목적은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이외에도,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경영방식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사고억제효과와 위해의 방지효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제조원가에 대한 흡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조물책임의 입법화가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품목에서 가격상승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나더라도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해방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유도된다면 일회성의 물가상승조차 상당부분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소송의 남발과 분쟁시비로 인한 인력과 시간의 소모 및 불가피한 이미지의 손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이 입법화되어 판례가 축적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이 명확화되면 무분별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법리상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거나 무과실책임을 위한 입법화가 세계적 경향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무과실책임적 구성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상품의 대량생산·판매·소비의 현대산업사회체제를 이룩한 오늘날의 경제적·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무과실제조물책임을 위한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는 법리상으로 과실에 기한 제조물책임구성의 제요소를 다소 완화하여 소비자보호를 도모하면서 무과실책임을 위한 입법의 길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화의 추진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정책분야의 국제화라는 차원에서도 제조물책임의 입법화가 불가피

하게 논의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를 국내외 상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시장을 무대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 기업들을 국제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소비자보호환경에 적응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하겠다.

IV. 참고자료

〈〈제조물책임법(안)의 주요항목 비교〉〉

- EC, 한국(국회안, 시안), 일본 -

1. 입법의 취지 및 목적

E C	前文: 제조자의 무과실책임만이, 최근의 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분배라는 전문성이 증대한 현대에 특유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그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과 그 이행의 확보방안 및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 본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피해가 생긴 경우에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조물의 정의 · 범위

E C	제2조: 본 지침에 있어서 「제조물」이란 제1차농수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말하며, 그 밖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1차농산물」이란 제1차가공을 한 제품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제조물」은 전기도 포함한다.
--------	--

	제15조제1항(a):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는 제1차 농산물 및 축산물을 제조물에 포함시킬 것을 가맹국의 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안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완성품·미완성품 및 자연산물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통과정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단, 제1차 농업생산물, 수공예품 또는 예술상의 제조물로서 공업상 제조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여기에서 제외한다.
시 안	제2조제1항: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 본	제2조제1항: 이 법률에 있어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3. 제조자의 정의(책임주체)

E	제3조제1항: 「제조자」란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의 제조자 또는 구성부품의 제조자 및 자기의 성명, 상표 기타의 표식을 제품에 부착하여 자신을 그 제조자로 표시한 자를 말한다. 제2항: 제조자의 책임과 아울러, 제품을 매각, 임대, 리스 기타의 방법에 의해 배포할 목적을 갖고 EC에 수입하는 자도 본 지침에서는 그 제품의 제조자로 보아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C	제3항: 제품의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공급자가 합리적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해서 그 제조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그 제품을 공급한 자를 고지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품의 각 공급자를 그 제조자로 취급한다. 수입품에 관해서는 그 제조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어도, 전항에서 정하는 수입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법	제2조제2항: 이 법에서 '제조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제조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2.제조물의 상표 및 표장 또는 상호나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붙여서 이를 유통시킨 자 3.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안	<p>제10조제1항: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물의 판매업자·임대업자. 다만, 이러한 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거나 제조물의 형상 및 이러한 자의 영업시설·규모 등에서 판단하여 결함을 알았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도 이를 제외한다. 2. 제조물에 결함을 발생케한 운송업자·창고업자 3. 제조물에 결함을 발생시켰거나 또는 점검하여야 할 결함을 간과한 수리업자
시 안	<p>제2조제2항: 이 법에서 제조자라 함은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자 및 제조물에 그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자를 말한다.</p> <p>제11조제1항: 판매, 대여, 리스 등 반포를 위하여 업으로서 국내에 제조물을 수입한 자는 본 법의 적용상 제조자로 보며,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진다.</p> <p>동조 제2항: 제조물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판매에 관여한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를 제조자로 본다. 다만 판매자가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 대해서 제조자 또는 당해 판매업자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수입품의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의 성명이 나타나 있으나 수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일 본	<p>제2조제3항: 이 법률에 있어 「제조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2.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제조물에 그 성명, 상호, 상표 그밖의 표시(이하 「성명 등의 표시」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에 그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3. 전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에 관련된 형태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자로 인정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4. 결함의 정의

E	제6조: 제조물은 이하의 사정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에 사람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한다. (a)제품의 표시 (b)제품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용도 (c)제품의 유통시기
법 안	제2조제3항: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이 통상 예견된 사용에 있어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불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제조물의 하자 를 말한다.
시 안	제2조제3항: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에 필요한 표시·경고가 없으므로 인하여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일 본	제2조제2항: 이 법률에 있어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의 특성, 그 통상예견되는 사용형태,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점 그 밖의 당해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무과실책임 및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E	제1조: 제조자는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9조: 제1조에서의 「손해」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사망 또는 신체상해에 의해 생긴 손해 (b)결함이 있는 제품외의 물건의 훼손 또는 손괴로 500ECU를 한계로 그 물건이
C	(i)통상은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에 이용되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ii)피해자에 의해 주로 그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일 것.
	제3조: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연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 안	<p>제2조제4항: 이 법에서 '손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사망 또는 신체상해 2.결함있는 물건이외의 재산의 훼손 또는 멸실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개인의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취득한 물건에 의한 손해일 것 나.피해자가 거래·영업 또는 직업을 위해서만 취득했거나 사용된 물건에 의한 손해는 이를 제외한다. 3.위자료 및 비재산적 손해
시 안	<p>제3조: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연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일 본	<p>제3조: 제조업자 등은 그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전조 제3항 제2호 혹은 제3호의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제조물을 인도한 후 그 결함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는 이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생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6. 면책사유(개발위험의 항변)

E	<p>제7조: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증명한 경우는 본 지침에 의한 책임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점 (b)제사정을 고려한다면,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은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 시킨 시점에 존재하지 않으며 또는 후에 생길 개연성이 있는 점 (c)제조자가 제품을 경제적 목적을 갖고, 판매 그 밖의 방법에 의해 배포하기 위해서 제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업으로서 제조 혹은 배포한 것도 아닌 점 (d)결함이 공적기관이 정하는 강제적 기준에 따라 제품을 제조한 것에 기인하는 점 (e)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의 지식수준으로는 그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점 (f)구성부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결함이 그 구성부품이 조립된 제품의 구조 또는 그 제품의 제조사가 행한 지시에 기인한다는 점
C	

시 안	제3조제2항: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으로는 당해 결함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제조자는 책임을 진다.
일 본	<p>제4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한 경우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책임이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제조물을 그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으로는 당해 제조물에 그 결함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2.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서 사용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당해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행한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랐던 것에 의해 생기고 또한 그 결함이 생긴 것에 관해 과실이 없는 점

7. 입증책임의 경감문제-추정규정

E C	제4조: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법 안	<p>제5조제1항: 제조물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가 적정한 사용에 의하여 통상 생길 성질의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p> <p>제2항: 손해의 발생 당시 존재한 제조물의 결함은 상당한 사용기간내에는 제조물이 제조자의 지배를 떠날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p> <p>제6조: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p>
시 안	<p>제5조제1항: 제조물을 통상 예견되는 방법으로 사용, 보존,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으며, 손해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p> <p>제2항: 손해의 발생 당시 존재한 제조물의 결함은 상당한 사용기간 내에는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켰을 때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p>

8. 기간제한

E	<p>제10조제1항: 가입국은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배상청구의 소송에는 3년의 제한 기간이 적용됨을 입법 중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제한기간은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를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p> <p>제2항: 제한기간의 정지 또는 중단에 관한 각 가입국의 법률의 적용은, 본 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p>
C	<p>제11조: 가입국은, 본 지침에 의해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손해를 야기 시킨 당해 제품의 유통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소멸하지만, 피해자가 그 기간내에 제조자에 대해서 소송절차를 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입법 중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p>
법 안	<p>제9조제1항: 이 법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p> <p>제2항: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p>
시 안	<p>제8조제1항: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는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동안은 중단된다.</p> <p>제2항: 제조자의 책임은 제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당해 제조물을 유통 시킨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p>
일 본	<p>제5조제1항: 제3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다.</p> <p>제2항: 전항 후단의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p>

9. 연대책임

E C	제5조: 구상권 또는 상환청구권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과 별도로 본지침에 있어서는 수인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경우 연대책임을지는 것으로 한다.
법 안	제4조: 동일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긴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손해의 금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시 안	제4조: 동일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각자가 그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0. 특약에 의한 제한

E C	제12조: 본 지침에서 생기는 제조자의 책임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책임제한 또는 책임면제조항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없다.
법 안	제8조: 생명·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특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
시 안	제9조: 본 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1. 손해액의 증감

시	제7조제1항: 결합발생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는 법원은 제3조에 의한 손해액외에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손해액의 2배의 범위에서 정별적 배상을 부가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제조자가 결합있는 제조물을 만들게 된 동기 2.그 결합에 의해 발생한 위해의 성격 및 정도 3.결합 발견 후의 제조자의 태도
---	--

안

4. 제조자의 재정상태

제3항: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축소를 위하여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제조자가 다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상당한 범위에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2. 배상이행확보조치

법 안	<p>제12조(손해배상조치의 강제): 법령에 정한 제조물의 제조자 중 법령으로 정한 자는 그가 생산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생명·신체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강구하지 않으면 그 제조물을 유통과정에 두지 못한다.</p> <p>제13조(손해배상조치의 종류): 손해배상조치는 제조물책임보험계약·제조물 책임보통계약 또는 공탁으로서 그 내용 및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제조물손해배상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물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행한다. 제2항: 보험회사 및 보증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제조물손해보장사업부과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조치로서 공탁한 제조자도 또한 같다. 제3항: 재무부장관은 손해배상조치를 취할 제조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손해배상조치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그 손해를 전보한다. 제4항: 재무부장관은 제조자가 손해배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보장사업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때에는 그 제조자에 대하여 전보액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5항: 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보험회사나 보증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 안	제12조(손해배상조치의 강제): 대통령령에 규정된 제조물의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강구하지 않으면 그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못한다.

제13조(손해배상조치의 종류): 손해배상조치는 제조물책임보험계약·제조물책임보증계약 또는 공탁으로서 그 내용 및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제조물책임소송의 특칙

시 안	<p>제15조(대표당사자소송):</p> <p>제1항: 제조물의 동일한 결함으로 인하여 다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는 피해자 중의 1인 혹은 수인은 법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 전원을 위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2항: 전항의 소의 확정판결은 제외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 전원에 게 그 효력이 있다.</p>
--------	---

※ 「E C」: 1985년 EC지침

「법안」: 1982년 제조물책임법안(국회)

「시안」: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제조물책임법 시안

「일본」: 1994년 일본 제조물책임법(제정)

〈〈제조물책임법·법안·시안의 주요사항 총괄비교표〉〉

			우리나라 의 제조 물책임법 안 (1982년)	한국소비 자보호원 의 제조 물책임법 시안 (1989년)	EC지침 (1985년)	일본의 제조물책 임법 (1994년)	
제 조 물	유 체 물	부 동 산	일반의 부동산	○	×	×	×
		미가공 부동산	○	×	×	×	
		동 산	일반의 동산	○	○	○	○
		미가공농수산물	×	×	선택사항	×	
	에 너 지	전 기	×	○	○	×	
		기타의 에너지	×	×	×	×	
결함정의			불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하자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	사람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통상 가 져야 할 안전성의 결여	
개발위험의 항변			불채용	인정	선택사항	인정	
책 임 주 체	제조자		○	○	○	○	
	표시제조자		○	○	○	○	
	수입업자		○	○	○	○	
	판매·임대·리스업자		○	판매업자	판매업자	×	
	운송·창고업자, 수리업자		○	×	×	×	
	포장업자, 설치업자		×	×	×	×	

추정	결합존재의 추정요건	적정하게 사용, 적정한 사용에 의해 통상 생길 성질의 것이 아닌 손해	통상 예견는 방법으로 사용, 보존,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		x
	결합존재시기의추정요건	상당한 사용기간	상당한 사용기간	면책입증 규정	x
	인과관계의 추정요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	x	x
기간제	단기(소멸시효)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의 시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의 시효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를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 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
	장기(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	x	유통된 날로부터 10년	제조물을 인도한 때부터 10년의 시효(예외: 축적손해는 손해 발생시부터 기산)

한	구상권		손해를 배상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	×	×	×
	책임기간(제척기간)		×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	×	×
손 해 론	인 손	재산적 손해	○	○	○	○
	위자료		○	*	가입국에 위임	*
	물 손	제조물자체	×	#	×	×
	제조물이 외의 물손	개인용	○	*	○	*
		영업용	×	*	×	*
	순수한재산손해(逸失이익)		×	#	×	#
배 상 이 행 화 보 조 치	손 해 배 상 조 치	주체 및 대상	법령에 정한 제조물의 제조자 중 법령으로 정한 자	대통령령에 규정된 제조물의 제조자	×	×
		대상손해	인적 손해만	인적 손해만	×	×
		방법	보험계약, 보증계약, 공탁	보험계약, 보증계약, 공탁	×	×
	국가에 의한 보장사업		○	×	×	×
	제조물책임소송의 특칙		×	○	×	×

*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상황〉〉

		입법상황	제1차농수산물과 수렵물의 제조물인정여부	「개발위험의 항변」의 인정여부	동일결합제조물에 의한 인신손해에 대한 최고한도액
E C 유 럽 공 동 체	영국 (소비자보호법)	1987.5.15 제정 1988.3. 1 시행	불인정	인정	불설정
	그리스 (부령)	1988.3.31 결정 1988.7.30 시행	불인정	인정	설정(72억384만 드라크마)
	이탈리아 (대통령령)	1988.5.24 결정 1988.6.29 시행	불인정	인정	불설정
	룩셈부르크 (법률)	1989.4.21 제정 1989.5. 2 시행	인정	불인정	불설정
	덴마크 (법률)	1989.6. 7 제정 1989.6.10 시행	불인정	인정	불설정
	포르투칼 (정령)	1989.11.6 결정 1989.11.21시행	불인정	인정	설정(100억에 스쿠트)
	독일 (법률)	1989.12.15제정 1990.1. 1 시행	불인정	인정	설정(1억6000만 마르크)
	네덜란드 (민법개정)	1990.9.13 제정 1990.11.1 시행	불인정	인정	불설정
	벨기에 (법률)	1991.2.25 제정 1991.4. 1 시행	불인정	인정	불설정
	아일랜드 (법률)	1991.12.4 제정 1991.12.16시행	불인정	인정	불설정
	프랑스 (민법개정)	법안심의중 (양원협의회안)	인정	불인정	불설정
	스페인 (법안)	법안작성중	(인정)	(인정)	설정(100억 페세타)

E	오스트리아 (법률)	1988.1.21 제정 1988.7. 1 시행	불인정	인정	불설정
F	노르웨이 (법률)	1988.12.23제정 1989. 1. 1시행	인정	불인정	불설정
T	핀란드 (법률)	1990.9.17 제정 1991.9. 1 시행	인정	불인정	불설정
A (유 럽 자 무 역 연 합)	아이슬란드 (법률)	1991.3.20 성립 1992. 1. 1시행	인정	인정	설정(7000만 ECU상당)
스웨덴 (법률)	1991.12.17성립 1993. 1. 1시행	인정	인정	불인정	
스위스 (법률)	1992.10.9 성립 시행일미정	불인정	인정	불설정	
리히텐슈타인 (법률)	1993.1.14 제정 시행일미정	불인정	인정	불설정	
기 타	일본 (법률)	1994.6.22 성립 1년후 시행	불인정	인정	불설정

**자료출처: 일본 경제기획청의 「海外における製造物責任制度」(1993년8월)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소개

I.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

1.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목록

(1994.4.11.~1994.6.10)

◎경제기획원	69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위한민자유치법안관련 입법의견	
◎내무부	70
○지방세법 개정의견	
◎재무부	70
○보험업법 개정의견	
○상속세법 개정의견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의견	
◎법무부	71
○상법 개정의견	
○형법 개정의견 ; 간통죄 존속관련	
○형법 개정의견 ; 낙태죄 존속관련	
◎교육부	74
○교육공무원법 개정의견	
○교육법 개정의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문화체육부	76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관련 입법의견	
○영상진흥법(가칭) 제정의견	
◎농림수산부	77
○농지법(가칭) 제정의견	
◎상공자원부	77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건설부	78
○건축법 개정시안	
◎교통부	78
○교통기본법(가칭) 제정의견	
○선원법 개정의견	
◎환경처	79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의견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의견	

2. 1994년 정부입법예정 149개 법안관련 입법의견요지

(1994.4.11.~1994.6.10)

◎경제기획원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의견

- 공기업 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의 민자 유치정책에 따른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개정할 방침임. 우선 30대 재벌의 소유분산을 위해 순자산중 40%인 타회사 출자총액 제한비율을 25%나 30%로 낮추고, 30대 재벌지정때 자산총액외에 내부지분율과 업종전문화수준을 고려하며, 또 계열사별로 운영중인 출자한도는 그대로 두되 그룹별 출자한도를 별도 설정해 재벌확장 억제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보험그룹도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 출자나 사회간접자본시설 출자는 출자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 업종전문화와 SOC참여를 확대하기로 함(공정거래위원회).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위한민간자본 유치촉진법(가칭)」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리 처리하기로 함. 현재 개별기업별로 적용되는 출자한도와 별도로 재벌그룹전체의 출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 계열사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야하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사실상 백지화함(공정거래위원회).

: 조선 94.5.13.,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4면) 참조

○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위한민자유치법안관련 입법의견

-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과 정부가 보조금이나 융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도 당초 정부안에는 기본시설과 기타시설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본시설에 국한하기로 함.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한 민간토지에 대한 수용권 발동은 기본시설과 기타시설에 모두 허용 되어 부대사업용 토지는 제외하기로 하고, 일정규모 이하 사업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방정부에 사업추진을 위임하는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임.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기본시설의 부대사업에서 관광숙박업을 제외하고, △민자유치 집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사후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임 (동아일보 해설).

: 동아 94.6.9., 1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6면) 참조

◎내무부

○지방세법 개정의견

- 지금까지 각종 혜택을 받는 비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정부의 편의에 따라 지정되어 과세의 공정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합산방식을 통합하여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한 징세를 대폭 강화하는 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던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방안은 백지화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의 비과세 대상과 면제 및 감면대상도 크게 줄여 지금까지 세금혜택을 받아오던 정부 산하의 각종 투자 및 출연기관과 공단, 협동조합 공제회 등은 과세하도록 함. 도시개발세 등 목적세인 지방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세율을 틴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권한을 위임할 방침임(내무부).

: 동아 94.4.12., 3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52면) 참조

◎재무부

○보험업법 개정의견

- ①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회사의 점포설치와 이전을 보험감독원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보험대리점 영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바꾸고, ② 국제간

보험거래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국내보험사가 해외에서 보험을 인수할 때 현지모집조직을 이용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가계성 보험만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초급대리점도 오는 7월부터 운송보험과 기업성의 상해 및 도난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함(재무부).

: 조선 94.5.29., 11면

○상속세법 개정의견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현행 「세법」을 전면 개편키로 한 것과 관련, 「상속세법」을 개정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즉, 배우자간의 재산상속이 민법상의 법정 상속지분 비율 안에서 이루어지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또 상속세의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상속가액(과세표준) 기준을 10억원 초과에서 5~10% 정도 낮추는 등 현행 5단계 누진율로 되어 있는 상속세의 과표별 계급구간을 축소하기로 함(재무부, 국세청).

: 한겨레 94.4.16.,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3~84면) · 제8호(93~94면) · 제9호(101면) · 제12호(87면) 참조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의견

- 종교단체는 물론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등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부과를 유예하며, 또 기업들이 공장부지로 쓰기 위해 취득한 토지도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할 방침임(재무부).

: 세계 94.4.12.,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87~91면) · 제13호(77면) 참조

◎법무부

○상법 개정의견

- ①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7명이상'에서 '3명이상'으로 줄이고, ②

또 회계장부·대차대조표등 각종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방법도 마이크로필름·컴퓨터디스크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③상거래 관행의 변화를 반영, 종래 기명날인하도록 돼있는 문서작성 방법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④이와 함께 기업의 개업비용과 연구개발비를 정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이연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⑤또 소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허용하기로 하고, ⑥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및 등기사항인 주소지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법무부).

: 서울 94.5.26., 2면

○형법 개정의견 : 간통죄 존속관련

- 간통죄를 존속시켜야한다는 국민이 절반은 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처럼 찬반이 팽팽할 때 굳이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결국 간통제 존폐는 시기문제일 것이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한 개정법(안)에 찬성함(박삼봉 판사).
-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권리 향상책 등 제도보완이 폐지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전제 조건이 미성숙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비영속적인 요소를 「형법」으로 보호해야 할 법의범주에 둘 필요는 없음(김규현 서울지방검찰청검사).
- 국민의 법의식을 고려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임. 개정안에서 형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벌금형을 선택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람직하고, 운영에서도 실형을 피하도록 함(황해진 변호사).
- 간통죄는 존속시키되 간통의 개념을 '축첩'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함. 현행법은 간통죄의 순기능으로 가정과 여성 보호, 성윤리 보호, 간통 예방을 들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간통 피해자의 보복 심리 충족, 위자료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단이 있음(박상기 연세대교수).
- 간통죄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혼인제를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향락산업이 번창하고 성도덕이 없어진 실정인 만큼,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형량을 늘려야 함(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조선 94.4.22.,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8면) 참조

○ 형법 개정의견 : 낙태죄 존속관련

- 낙태 허용 범위를 현행 「모자보건법」에 두는 것보다 새로 「형법」에 담는 것이 법체계상 우월하므로 ①성범죄로 인한 낙태 허용 기간은 개정안 20주보다 훨씬 줄여야 하고, ②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 낙태 허용은 재검토 해야하는데, 이는 생명 존중의 가치가 혼인외자 출생 방지라는 사회 규범 가치보다 높기 때문이며, ③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판단할 의사는 낙태 시술 의사와 다른 제3자로 규정해야 하며 부정한 판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는 등 몇가지 수정을 요함(박삼봉 판사).
- 낙태 문제는 처벌론과 불벌론 극단의 입장을 피하되 개정안이 낙태허용 사유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형아 등 우생학적 경우 임신 2주 이내, 성범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간 임신 등은 20주 이내로 구체적 사유별로 허용 기간을 정하고, 낙태허용기간을 줄인 것은 적절한 것임(김규현 검사).
- 새로 「형법」에 넣는 것보다 지금처럼 「모자보건법」을 손질해 현행법이 규정한 위법사유보다 범위를 강화해야 함(황해진 변호사).
- 현행 「모자보건법」 상의 규정을 「형법」으로 흡수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 타당한 일이나 의학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에도 임신 기간의 제한이 있어야 하므로 모체의 건강침해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어야 함. 12주 안에 일반 낙태를 허용하되, 의사나 종교단체, 사회 사업가와 상담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낙태 억제 장치를 두도록 하고 허용 된 낙태를 하는 경우에도 시술 의사가 의학협회 등에 신고하도록 해야함(박상기 연세대교수).
- 「모자보건법」이건 「형법」이건 낙태 허용 조항을 두는 것에 반대함. 개정안에서 아무런 절차 규정 없이 시술 의사 한사람에게 낙태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자연법과 실정법이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이므로 생명이 위독한 임신부 등 치료에 따른 낙태는 예외규정으로,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등의 규정없이도 긴급피난조항으로 충분함(송열섭 신부).
- 낙태죄와 관련있는 법 조항을 「형법」 개정안에 통합하는 것은 의료인은 물론

일반 차원에서도 합당한 일이나 낙태 혀용 사유 중 '강간, 준강간, 강간 미수'에 의해 임신한 경우 중 미수범은 임신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함(홍성봉 롯데호텔 의무실장).

: 조선 94.4.22., 5면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개정의견

-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집행은 물론 교사양성·교사채용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신분도 국가직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바뀌어야 함(김덕환 교원지원국장).

: 서울 94.6.6., 1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54면) 참조

- 교장명예퇴직제 부활을 위해 다음의 원칙에 의거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주기를 요망함. ①교장이 임기중 사정이 있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교장직분으로 명예퇴직하면서 교원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②65세 이전에 중임까지의 임기(8년)를 마치고 퇴직하는 교장에게는 65세 정년에 도달하기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교육법 개정의견

- 우수한 공업계 교사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이를 전문기술인력에 대해 교사자격 검정시험을 치르거나 특채를 통해 교사자격을 줄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때 관련교육법을 개정키로 하고 또 전문대나 공고졸업자로서 중·고교에서 기술교육을 전담하는 실기교사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력을 쌓았을 때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딸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함(교육부).

- 우수재능아가 월반·속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5학년도부터 월반과 조기입학·조기졸업, 수업연한 단축 등을 포함하는 '학년별 속진제'를 실시하고, 특정과목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자신의 학년과 상관없이 대학을 포

함한 상급학교에서 해당과목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과별 속진제'는 97학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임(교육부).

- 국민학교 음악·미술등 예체능과목 전담교사를 일반대학 졸업자중에서 충원하는 방안과 함께, 고령 초등교사의 상급학교 전직을 가능하게하여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임(김숙희 교육부장관).
 -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와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을 유일한 합법 교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을 고쳐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교육개혁위원회, 교육부).
 - 노동부가 우수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기로 한 방침은 전문대와의 기능 중복·기술인력의 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교육부).
 - 대졸자 초과공급으로 인한 취업난, 고학력 실업자 양산에 따른 막대한 교육투자 낭비가 지적되고 있는 형편에 4년제 기술대학 신설은 타당성이 없으며 산업체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고와 전문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더 바람직함. 기술대학설립요건과 현 교육법체계에 의한 전문대·개방대 설립요건은 형평성이 없으며 UR타결에 의한 교육개방에 따라 외국에서 기술대학형태로 국내시장 진출시 대응방안도 없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지난 해 전문기술자(전문학위 수여) 양성을 목적으로 기업체부설 4년제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다가 전문대측의 강한 반대로 보류되었으나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임(상공자원부).
: 국민 94.5.24., 18면; 한겨레 94.5.25., 18면; 한국 94.4.18., 31면; 한겨레 94.4.25., 18면; 한국 94.4.30.,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1면)·제8호(76면)·제11호(81면)·제94-1호(54~55면) 참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학원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지난 해부터 추진중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이 시급하므로 당국은 이번 기회에 학원들이 우수한 강사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길을 마련하고, 강사의 약력등 교습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질높은 교습을 하는 학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등화방안도 모색하여야 하며, 입시 또는 어학등 학원의 성격에 따른 시설기준을 크게 강화해 무자격 학원의 난립도 방지하고, 학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원경영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함(경향신문 사설).

- 국민학생에 대해 국어·영어 등 일반과목의 학원과외를 허용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현행처럼 금지하기로 하되 미취학아동(유치원생)의 일반과목 학원과외의 경우 지난해 입법예고 때의 금지방침에서 후퇴, 현행법처럼 아예 관련규정을 두지않기로 해 사실상 허용하기로 함. 다만 독서·작문 등과 같이 학교수업으로 충분하지 않은 특정 분야의 학원과외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교육청별로 교습수요기준(동일계·동일과목 학원간의 거리제한)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기로 함(교육부).

: 경향 94.5.14., 3면; 조선 94.6.10., 3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3면) · 제11호(86면) · 제13호(67~68면) 참조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문예진흥기금 명목으로 입장료에 2~7%씩 부가하는 현행 기금조성방법은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이므로 기금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문예진흥기금이 기부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아예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으로 바꾸어야 함(내무부).
- 문예진흥기금을 '부담금'으로 규정할 경우 국민들에게 납세의무감을 주게 됨(문화체육부).
- 문화예술복권발행(20조)과 시·도의 전문예술단체육성을 위한 국고보조 근거조항(10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경제기획원).

: 세계 94.4.29., 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84면) 참조

○영상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외국영화직배로 국내영화시장의 상당부분이 잠식되고 올부터 프린트벌수제한이 풀린 마당에 스크린쿼터제마저 축소한다면 우리 영화제작기반은 뿌리째 흔

들릴 것이므로 취약한 영화산업기반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를 최소한 현재수준으로 유지해야 함(한국영화제작가협회).

- 한국영화제작현실이 어렵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국제화·자율화 추세에 더 이상 스크린쿼터와 같은 규제책으로는 개방파고를 지탱해 나아갈 수 없으며, 영상진흥기금의 상당부분을 떠안아야 할 극장측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음(당정).

: 세계 94.5.22.,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0면) 참조

◎농림수산부

○농지법(가칭) 제정의견

- 농지전용허가제한 폐지는 논 한가운데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 등 농지이용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변농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농지전용에 대한 가수요로 인하여 농지를 대규모로 유휴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한겨레 94.4.22., 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91~93면) 참조

◎상공자원부

○소비자보호법 개정의견

- 부작용이 많은 과대포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규제 장치가 미비한 때문인데 「소비자보호법」에는 포장기준에 대한 표시 조항이 있으나 품목별 포장세부기준이 없고 환경처의 포장에 관한 법조항은 포장 폐기물에 관한 언급만 있고 포장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기준이 엄격하지 못하여 기준강화가 필요함. 또한 공업진흥청의 포장에 관한 조항은 사업자중심이고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들 가운데는 포장관련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업자가 많음(박희주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원).

: 한국 94.3.3., 1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0~61면) · 제94-1호(68면) 참조

◎건설부

○건축법 개정시안

- ①그동안 건축허가시 허가관청이 모두 확인했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미관, 구조, 설비, 내부공간배치등에서 허가관청은 용도나 규모, 형태등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한 기본계획도면만을 제출받아 확인하기로 하고 내부구조등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사가 확인한 후 신고만 하고 착공하도록 하며, ②관청의 허가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민간인인 건축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③위법·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축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감시관제를 도입하고 감시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④건물시공자가 위법이나 부실시공을 할 경우 감리권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의 감리부실로 건축주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감리자를 처벌할 계획임. ⑤건축주와 시공자 감리및 설계자등 건축주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현장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시공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함(건설부).

: 한국 94.5.26.,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1면) · 제94-1호(74면) 참조

◎교통부

○교통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교통투자의 종합적인 조정 결여, 장기종합교통계획 부재, 교통운영권한의 분산, 생활권 광역화에 대응한 광역교통행정체계 미비, 교통통계 및 기술 연구개발체제 미비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며 분산된 교통행정권한을 종합 조정하는 광역교통행정기구와 국가의 교통정책을 총괄ism의하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교통문제 개선안을 토대로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교통기본법(가칭)」을 제정해야 함(교통개발연구원『교통정책 토론회』).

: 국민 94.5.27., 4면

○ 선원법 개정의견

- 외국인 선원의 국적선 취업,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국내 수용 등으로 선원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맞춰 기존의 선원 근로관계 협의창구인 선원정책 협의회를 폐지하고 새로 선원고용정책심의회를 신설하여 국적선원 및 외국선원 고용, 최저임금, 기준 노동시간, 기준 임금 등 주요 현안을 심의·결정하도록 하며 선박설비 관계 규정을 강화하고 선주가 파산했을 경우 정부가 해외조업 선원의 송환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상선원과 노동조건이 크게 다른 어선원들을 위해 「선원법」속에 어선원편을 신설해 어선원의 정원, 임금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임(해운항만청).

: 한겨레 94.5.29., 2면

◎ 환경처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의견

- 환경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시·군단위 이상의 3백평 이상 유통 소비시설 및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생산제조시설 및 주거시설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든 주택에 부과할 경우 환경 세 성격을 갖게 되므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공동주택에 우선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박윤흔 환경처장관).

: 동아 94.5.12., 2면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의견

- ①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에 관한 환경오염 실태를 상시조사해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지구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②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에 따른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오염등에 대비, 환경오염의 범위에 지하수오염을 추가하고 온배수배출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변화도 오염의 범위에 넣어 피해보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③ 환경자원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고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염을 유발하는 석유 등 에너지원에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⑤ 이밖에 환경보전사업과 관련, 수익자부담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함(환경처).

- 생태계 파괴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호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산성비가 생태계를 파괴하더라도 책임부서가 없는 실정이며 또 산성비에 대한 법적규제장치는 어디에도 없음. 오염배출구는 단속이 가능한 반면 비점오염원의 단속이 불가능한 것이 환경법의 맹점이며, 오염원인을 추적하는 법이 없어 오염원규제가 되지 않고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오염규제에 대한 방향을 못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도 흐지부지한 상태임(안기희박사 아·태환경 NGO 한국본부위원장).
- 생물보호관련법의 경우 소관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법이 필요하고, 국내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며 정부는 선진국의 환경심사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권장해야 함(이상돈 중앙대 교수).
- 환경선진국들이 자국의 환경에 유해한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당해 제품의 생산공정이나 생산방법 자체가 환경기준에 미흡할 경우까지를 규제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기업체가 이에 대처하고 국제환경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법제도가 제정되어야 함(이장희 한국외국어대교수).

: 동아 94.5.19., 30면; 세계 94.5.23.,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19면) 참조

II. 최근입법의견 동향

1. 최근입법의견목록

(1994.4.11~1994.6.10)

◎憲政	86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국회법 개정의견	
◎統一·外交·國防	87
○군사법제도개선관련 입법의견	
○북한동포의국내거주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귀순북한동포보호법 개정의견	
◎內務·地方行政	8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관련 입법의견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국가공무원법등 개정의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의견	
○도농복합형시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민간단체지원육성법(가칭) 제정의견	
○삼청교육훈련피해보상(배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시·군통합에관한 입법의견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의견	
◎社會·文化·教育	91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의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의견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규정 개정 의견
- 국외 유학 관계 법령 개정 의견
- 노동 관계 법 개정 의견
- 노인 복지 법 개정 의견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개정령 안
- 뉴미디어 관련 입법 의견
- 대중 문화 보호 법(가칭) 제정 의견
- 대학 설치 기준령 개정 의견
- 문화 재 보호 법 개정 의견
- 미술 대중화 관련 입법 의견
- 사립 학교 법 개정 의견
- 사회 보장 기본 법(가칭) 제정 의견
- 사회 복지 사업 관련 입법 의견
- 영유아 보육 법 개정 의견
- 영화 법 및 음반 법 개정 의견
-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입법 의견
- 종교 법인 법(가칭) 제정 의견
- 종합 유선 방송 법 개정 의견
-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의견

◎ 產業 · 經濟 99

- 경쟁력 강화 관련 입법 의견
-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의견
-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 세법 관련 입법 의견
- 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 의견
- 외국인 투자 관련 입법 의견
- 정부 입찰 제도 관련 입법 의견
- 제조물 책임 법(가칭) 제정 의견
- 조세 범처별 법 개정 의견

○주세법 개정의견

○해외증시상장관련 입법의견

◎農林·水產 104

○농수산물유통관련 입법의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재개정의견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풍수해대책법 개정의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의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정안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관련 입법의견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의견

○협동은행설립관련 입법의견

◎建 設 10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

○건설업제도관련 입법의견

○공동주택·빌딩관리의 통일적인 기본법(「건물관리법(가칭)」) 제정의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입체도로제도 도입방안관련 입법의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의견

○지하수법시행령 제정안

○지하수법시행규칙 제정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하수도법 개정의견

○하천법시행령 개정안

◎科學技術·交通·遞信 116

○과학기술정책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안
- 통신사업구조개편관련 입법의견

◎ 環境 · 保健 119

- OGR관련 입법의견
- 공중구강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금연법(가칭) 제정의견
- 노인건강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뇌사및장기이식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산업의제도관련 입법의견
- 산업재해관련 입법의견
- 소음 · 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약사법시행령 개정의견
- 예방접종사고관련 입법의견
- 음용수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의료법 개정의견
- 의료법시행령 개정의견
-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의견
-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환경관리관련 입법의견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法院 · 法務 127

- 경매제도관련 입법의견
- 공공변호사제관련 입법의견
-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 부동산등기대장일원화관련 입법의견

- 부동산등기법 개정의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의견
- 사법제도개혁관련 입법의견
- 성희롱관련 입법의견
- 양심선언자보호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입양특별법 개정의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의견
- 특허제도개선관련 입법의견
- 행정보고관련 입법의견
- 형사특별법 개정의견
- 호적법 개정의견

2. 최근입법의견요지

(1994.4.11~1994.6.10)

◎憲政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그것을 고치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법 개정이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하지 국회기능을 위축시키는 개악이 되어서는 안됨(국민일보 사설).
: 국민 94.6.10.,3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69~70면) · 제11호(66면) · 제12호(62~65면)
참조

○국회법 개정의견

- 이제 국회는 엉성한 입법절차와 의원의 입법권 횡포와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국리민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입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당력을 떠나 법안의 정밀심사장치와 소위활동의 완전공개 및 회의내용 기록의 의무화등 제도적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함(한국일보 사설).
- 국회제도개선위가 건의한 내용중 잠정합의한 개원 및 원구성 시기 법정화, 본회의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 상임위 정례회의 횟수확대, 의원이나 위원회에 대한 법안심사 지원기능 강화, 국회예산독립성 보장 등이 정파간의 이해가 결린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당적 이탈문제와 예결위 상설화, 상임위원 겸 임제도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동아일보 해설).
- 의원입법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의원입법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제를 도입하고 또 법안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속기록이 남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법안의 축조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임(민자당).
: 한국 94.5.18.,3면; 동아 94.5.22.,4면; 동아 94.5.23.,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66면) · 제8호(64면) · 제9호(85~86면) · 제11호(66면) · 제94-1호(48면) · 제94-2호(76~77면) 참조

◎統一·外交·國防

○군사법제도개선관련 입법의견

- 현행 군사법원 조직 대신 군 사법운영을 총괄하는 '군 사법운영단'을 7월부터 설치, 재판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군 사법운영단'은 장관 직속기구로서 산하에 고등심판부, 보통심판부,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법송과, 사무처등을 두며 고등 및 보통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에 대한 재판, 국방부본부 및 직할부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국방부본부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업무, 국방부직할 군수사기관에 대한 군사법원법상의 지휘·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국방부).
-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 부대에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에 설치하면 참모총장 및 사단장이 관할관의 지위를 상실하여 지휘권 약화가 우려되며, 또 상당수 지휘관들은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군판사의 구속영장 발부권한, 국방장관 및 참모총장에 군판사의 임명권 위임 등도 군지휘체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음(국방부).

: 조선 94.4.11., 30면; 세계 94.4.13., 21면

○북한동포의 국내거주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견

- 귀순 또는 망명의 경우가 아닌 귀순자에 대한 국고지원방식대신 민간차원의 '북한동포후원회' 등을 구성, 민간기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규준도 포함하여 국내거주를 희망하는 북한동포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교육, 호적취득등에 관한 법규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함(당정).
- 냉전시대의 북한 귀순용사를 겨냥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나 국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인도주의, 통일지향, 점진주의, 국내 서민들과의 형평성, 민관협조등의 원칙 아래 새로운 법률 「북한난민 사회정착지원법(가칭)」의 제정이 요청됨(김상균 서울대교수).

○ 귀순북한동포보호법 개정의견

- 정착금 대신 이들이 주거를 얻어 정착할 때까지 일정기간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정한 월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현행 주택제공규정도 폐지하고 귀순후 일정기간은 집단수용시설에 수용할 방침임. 또 이들의 호적등록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보사부장관이 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취적허가신청을 제기하던 것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해 취적하도록 개정하기로 하고 민간단체 등이 이들의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킴(보사부, 법무부).

: 한국 94.4.16., 2면; 국민 94.4.26., 4면; 경향 94.6.1., 23면.

◎ 内務 · 地方行政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입법의견

-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정부투자기관, 국가나 지자체의 투자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각급학교 및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특히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요청하도록 이를 제공한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입·출력하거나 조회 검색한 경우에는 그 처리일자와 담당자, 처리내용이 컴퓨터에 자동기록되도록 의무화 함(총무처).

: 국민 94.4.20., 2면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지난해 6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후 법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과 그 시행령이 금융거래 사실의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의 금융자산 내용을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실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임(국회 윤리위).

: 동아 94.5.19., 2면; 한겨례 94.5.31., 2면

○ 국가공무원법등 개정의견

- 현재 주사(6급)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반드시 치르게 돼있는 시험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사회분위기 쇄신대책을 마련한 바, ①사무관 승진시험성적 70%, 근무실적 30%를 반영해 평가하고 있는 현 제도를 근무실적평가 위주로 전환해 나가되 장기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시험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며, ②「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5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복수직급제도를 4급까지 확대, 4급 공무원이 3급 직위에도 기용될 수 있도록 하고, ③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기회를 총승진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6급이하의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며 ④이밖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 업무목표를 평정대상자들에게 동시에 부여한 뒤 구체적 실적을 비교해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목표관리제도(MBO)를 도입하기로 할 방침임(공직사회 분위기쇄신대책).

: 동아 94.5.10., 1면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의견

- 지나치게 남발되는 기부금품 모집행위로 기업들이 해마다 막대한 준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개정,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하고 기부금모집허가절차도 강화하기로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목적의 범위를 현행법상의 7가지 경우에서 ①국제적 구호사업 ②천재지변 구호사업 ③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의 3가지 경우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며 또 법에 열거된 이들 사업외에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타 사업으로 분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필요성판단은 현행법의 내무부장관이 아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계획임(내무부).

: 세계 94.5.8., 7면

○ 도농복합형시에관한특례법(가칭) 제정의견

-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할 예정인 33개 도농복합형 시의 군지역에 대해 세금과 부담금 납부를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상 제한에 대해서도 특례를 예전처럼 인정하기로 하며 통합되는 군지역에 대하여 농공단지 ·

농어촌휴양지 조성 등 농외소득사업과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을 해주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할 방침임(지방자치제관계장관회의).

: 조선 94.5.31., 2면; 한겨레 94.5.31., 2면

○ 민간단체지원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정부출연금, 국민성금, 기업출연금등으로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야의원과 민간단체 대표등으로 '기금배정 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제약해 온 「기부금품모집금지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등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음(민자당).
- 관변단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시민운동단체의 반발을 살 것이고 한편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의 중단은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시민운동단체와 관변단체를 구분하지 말고 동일선상에서 단체가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홍두승 교수).

: 국민 94.5.3., 2면

○ 삼청교육훈련피해보상(배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최근 법원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으나 판결을 통한 개별적 구제는 3만여명에 이르는 피해자의 구제수단으로는 역부족이며 법률제정을 통한 보상만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길임(대한변협).

: 세계 94.6.2., 26면

○ 시·군통합에관한 입법의견

- 「자치단체통합특례법(가칭)」을 제정하여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과정에 물의가 있었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통합기회를 다시 마련할 방침임(내무부).
- 농어촌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종전 군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이를 위해 1백50여개의 법령을 정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임(이시종 내무부지방기획국장).

: 서울 94.5.14., 6면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의견

- 부부동거시 합의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부인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거주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초본도 해당 시지역 모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등록전출입신고제도 가운데서도 전출신고를 폐지하기로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시 민원인들이 파출소에 신고하는 절차도 없애기로 함(내무부).

: 국민 94.4.19., 19면

◎社會·文化·敎育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가정폭력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 방지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가정폭력법(가칭)」제정추진을 위한 전국연대 모임).
- 가정내 문제로만 여겨온 아내 구타문제를 '사회적 범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피해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남성의 관리와 치유대책이 제도적·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이영자 성심여대교수).
- 「가정폭력에관한특별법(가칭)」을 따로 만드는 것, 따로 법을 제정할 필요 없이 「성폭력특별법」에 「가정폭력법」을 통합하여 「여성에대한폭력방지법(가칭)」을 만드는 것 등 두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함(심영희 한양대교수).

: 한겨례 94.5.15., 8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의견

- 정부기구를 축소하자는 마당에 기구신설은 있을 수 없고 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서비스업무에는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민간이 적합하다는 것도 반대명분이 되며, 또 공무원의 경우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맡기거나 고용보험관리공단(가칭)을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시켜야 함(경제기획원).
- 고용보험의 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경우 대상근로자는 4백50만명,

사업장은 3만8천여개소에 달함에 따라 고용보험의 연평균 소요예산 4천7백억 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은 월평균 임금 총액의 1%선이 적정하게 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0.25%, 사용자가 0.75%를 각각 부담하도록 할 방침임(노동부).

: 한국 94.4.26., 30면; 동아 94.6.7., 29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83~84면) 참조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성적이외 사회봉사활동등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한 학생선발방법을 구조적으로 봉쇄하고있는 현행 「교육법」시행령 제72조를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 96학년도 신입생선발 때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기여입학제만큼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은 여전히 불허할 방침임(교육부).

: 경향 94.6.2., 23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4면) · 제9호(94면) · 제13호(69면) · 제94-1호(55면) · 제94-2호(85~86면) 참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개정의견

- 지난 89년에 교육부의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교육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음에도 실제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총과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마련된 교원권익분야등 합의사항도 정부가 이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도 교육부 실·국·과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직제를 개편해야 함(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세계 94.4.24., 21면

○ 국외유학관계법령 개정의견

- 자비유학의 경우 최소학력 요건인 고교졸업 이상 규정은 현행대로 두되 시험요건인 외국어시험을 폐지하여(대출자는 지금도 면제) 고졸자, 전문대·대학재학생, 전문대졸업생들도 시험부담 없이 유학기관의 입학허가서만 받으면 자율적으로 유학할 수 있게 되고 또 병역미필자의 자비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추천권을 대학생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총(학)장에게 주되 고졸자의 경우는 현행 교육감추천에서 출신고교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질차를 간소화함(교육부).

: 한겨레 94.4.15., 1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0~61면) 참조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노동법중 '공무원 교사등의 단결권 금지',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정치활동 금지' 조항등은 명백히 ILO협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올해안에 마무리해야함(신계륜 민주당의원).
-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한 선진국수준에 접근하고 있어 블루라운드가 타결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복수노조 및 제3자 개입금지, 공무원 단결권 제한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이 노동기구 협약 제87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의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이와 함께 노동기구 협약 제29조인 '강제근로에 관한 조약'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강제근로가 거의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전투경찰설치에관한법률」, 「교정시설경비교도대법」, 「병역특례법」 등 병역의무자 가운데 일부를 전투경찰이나 교도경비대, 산업진흥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병역관련법이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법의 개정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음(노동부).
- 블루라운드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고용 제한과 강제근로 폐지를 포함한 노동관계법의 정비·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임(한겨레신문 사설).

: 경향 94.4.15., 5면; 국민 94.4.16., 18면; 한겨레 94.4.17., 14면; 한겨레 94.4.19.,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5면) · 제2호(45면) · 제7호(61면) · 제8호(78면) · 제9호(94면) · 제94-2호(89면) 참조

○ 노인복지법 개정의견

- 노후를 실버산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중산층 노인의 욕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노인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함(박재간 소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공적서비스를 확대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특히 시설수용에 앞서 주간 혹은 단기보호시설 가정간호 등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차웅봉 한림대교수).

- 앞으로 무의탁노인은 무료, 서민층 노인은 국가보조 50% 본인부담 50%, 경쟁력이 있는 중산층노인은 자기부담으로 가정봉사원제도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임(조기동 한국노인복지회 회장).
- 시설수용은 제한적으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선 건설한 업체에 한하여 허가를 해야 하고 시설내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나 계약위반이 없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의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노인들이 시설에 일정기간 살아보고 나서 입주를 결정하는 경험입주제의 도입이 필요함(서혜경 한국노인의 전화 이사).

: 조선 94.5.8., 17면; 동아 94.5.12., 1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81면) · 제10호(80면) 참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정봉사원은 식사준비 및 식사시중, 청소 및 세탁, 목욕, 머리감기기, 병원이나 산책등 외출시 동행서비스, 말벗 등 우애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턱노소 역할을 할 주간보호사업은 하루 낮시간동안만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 오락등 여가생활 서비스등을 제공하도록 함(보건사회부).
- : 세계 94.6.9., 25면

○ 뉴미디어관련 입법의견

- VOD서비스(요구즉시형 비디오 서비스)는 영상데이터베이스를 전화선을 통하여 시청하는 것으로 첨단 통신서비스의 일종임(한국통신등 통신업계).
- VOD는 결국 방송물과 시청행태에서 방송영역에 속하는 즉 VOD가 전송방식 자체는 전기통신 영역이지만 결과적으로 CATV(종합유선방송)의 변형서비스에 불과하여 방송의 일부분임(공보처와 방송계).
- 현재의 법과 제도 아래서는 새로운 성격의 뉴미디어가 나타날 때마다 관련기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것이므로 관련부처를 일원화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시급한데, 즉 방송과 통신의 신종 서비스에 관한 명확한 관할주체 설정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원칙들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함(국민일보 사설).

: 국민 94.4.25., 11면

○ 대중문화보호법(가칭) 제정 의견

- 일본만화의 경우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외설적이며 폭력적인 요소가 많아 문제 가 있는데 일본만화를 포함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만화의 사전심의를 강제화 하는 법인 「대중문화보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함(이원복 덕성여대교수).

: 조선 94.5.19., 19면

○ 대학설치기준령 개정 의견

-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학과 단위로 9명 정도씩으로 되어있는 교수 법정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또 학과 단위의 정원확보율 계산을 계열별 단위로 전환, 계열별로 교수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중이고 이와 별도로 현재 학과 증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정정원 대비 62%의 교수확보율을 매년 1%씩 늘려 2천년까지 7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임(교육부).

: 조선 94.4.11., 31면

○ 문화재보호법 개정 의견

- 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 있으나 30년이 지나는 동안 시대상황이 변하여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보유자의 인정과 관리상 전수자 부족, 종목간의 불균형은 개선되어야 함(문화체육부).

: 서울 94.6.6., 11면

※ 「국내입법 의견조사」 제8호(82면) · 제11호(84~85면) · 제12호(80면) · 제13호(63면) 참조

○ 미술대중화관련 입법 의견

- 미술의 대중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법상의 '손비처리인정'과 건축물에 대한 '예술품 1%법'의 의무조항 부활 등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함. 경매제도가 미술품 거래의 양성화, 미술시장 참여범위의 증대, 공정거래의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경매관계법 제정 △96년 시행예정인 양도소득세의 폐기 △미술품 담보제도의 도입 등으로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대처해야하고 특히 기업의 '미술품 구입예산'에 대한 양성적 인정등 정부의 해당 「세법」 보완과

경매실시에 따라 파생될 기존 유통체제의 혼란이나 지나친 상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형 경매제' 개발이 필수적임(최병식 미술평론가).

- 우리나라의 금융환경도 미술품 담보수용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미술품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과 화재·도난 등에 대비한 미술품보험의 시급히 정착돼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미술관 증설 △국제미술제 창설 △기업의 미술문화 지원 △미술품 담보금융과 보험제도의 실용화 △미술품창고 설치 △양도세 전면철회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정책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함(강효주 보람은행 태평로지점장).

: 경향 94.4.28., 13면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국·공립보다 사학에서 교권침해 시비가 잦은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일부 독소조항이 주원인임(전교조).
- 교직원의 임면권이 재단에 있어 인사권 남용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학교에 돌려주어 재단의 인사전횡을 막아야 함(박석무 민주당의원).

: 세계 94.5.17., 11면

○사회보장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한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또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에 「사회보장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시·군·구 별로 이 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보건소 조직에 복지기능을 추가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32만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씩의 괴복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함(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 동아 94.5.13., 2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7~78면) · 제9호(96~97면) · 제94-2호(90~91면) 참조

○사회복지사업관련 입법의견

- 생계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 현재 최저생계비의 66%인 보호 수준을 1백%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2000년부터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기로 함. 이밖에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진흥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사회복지사업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며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는 대신 내년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가칭)」을 제정, 공동모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함(보사부).

: 서울 94.5.13., 1면

○ 영유아보육법 개정의견

- 남녀구분없이 3백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탁아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임(민자당).

: 동아 94.5.5., 3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4~45면) · 제8호(83~84면) 참조

○ 영화법 및 음반법 개정의견

- 다른 문화·예술 창작작품과 마찬가지로 영상과 음반도 사전심의가 없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함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음. 작품의 내용이 현저하게 사회풍속에 어긋날 경우 다른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형법」 등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할 수 있으며 시중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사전 심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엄격한 법적 적용의 손이 미치지 않거나 그런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한겨레신문 사설).

: 한겨레 94.5.12.,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6면) · 제94-2호(92면) 참조

○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입법의견

- 지하철 등 공공시설을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데 이제는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관한법

률(가칭)」등을 제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임(백형기 녹색교통운동간사).

- 공공시설물들의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는 건축관련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임의조항이 많기 때문이며 장애인들의 편의시설확보를 위해 '강제규정'을 들 필요가 있음(조홍식 서울대교수).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신규 공공건축물과 대중이 드나드는 시설물에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화하고 인도와 차도의 떡높이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 훨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점자유도블록의 설치도 의무화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을 돋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조항이 「건축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시행령과 세부기준까지 마련해야 함(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문화된 「장애인복지법」을 살려야 함(조형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부장).
- 강제조항을 만들면 기존건물도 기준에 맞추어야 하고 엘리베이터 화장실 문 등도 설치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이를 실천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법을 만들면 불필요한 낭비만 따르게 됨(박용환 한양대교수,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장애인문화 창달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방안모색 정책토론회』).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므로 아예 기존의 장애인관련법을 통합하는 「장애인기본법(가칭)」을 만들어 인권을 보장하고 기본법에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함. 미국이 지난 90년에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법을 모아 제정한 ADA(장애인법)는 좋은 본보기임(오혜경 성심여대교수).

: 세계 94.4.25., 9면

○종교법인법(가칭) 제정의견

- 범종교적 화합과 종교재단의 보호를 위해 「종교법인법(가칭)」을 제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중임(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 한국 5.25., 2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82면) · 제13호(66~67면) · 제94-2호(92~93면) 참조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의견

- 종합유선방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강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복수로 방송국을 소유하도록 할 방침임(당정).
: 동아 94.5.4.,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61면) 참조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① 위원장인 노동부장관과 8개부처 차관, 노사대표 및 전문가들로 고용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고용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② 고용조정지원 업종·지역은 지정고시로, ③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예산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업자등에 대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④ 소개하려는 직종의 근무경력이 10년을 넘으면 직업소개소를 차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직종별 전문화를 위해 이들 개별사업자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5개 이내로 제한하고 허위구인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같은 광고를 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⑤ 이밖에 유료직업소개업자가 인신매매 등 불법 직업알선을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노동부).

: 서울 94.5.7., 2면

◎ 產業 · 經濟

○ 경쟁력강화관련 입법의견

- 기업의 원가절감노력을 뒷받침하는데 UR이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2000년대 공업배치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해외금융조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등 금융제도개혁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산업기술대학법(가칭)」을 제정해야 함. 또 외국인 투자개방을 국내산업의 경쟁력향상 기회

로 활용하기위해 '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예시제'를 제검토, 경쟁력향상이 시급한 분야의 개방을 앞당기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함(상공자원부).

- 고용 · 노동 · 사회문제위원회(ELSAC) 가입을 계기로 미성년자근로, 강제근로, 복수노조 및 제3자가입금지조항의 철폐여부를 포함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임(노동부).

: 동아 94.5.20., 10면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전자 변성기 제조업 등 7개 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은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5%(원안에서는 30%)범위내에서 증설을 허용하며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자동화,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 과밀역제권역 또는 제한정비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허용하도록 함(상공자원부).
- 우수기술인력의 지방근무기피, 바이어접대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대기업이 수도권밖으로의 이전을 꺼리는 것은 결국 수도권의 인구유발을 부추기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함(건설부).

: 경향 94.4.13., 9면; 조선 94.5.18.,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0면) · 제3호(57면) · 제12호(62~65면) 참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계약서교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다 소비자들이 방문판매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 필수적이나 실제 계약서 미교부때문에 권한행사를 제약받고 있고, 현재 계약서미교부 별칙조항은 벌금 5백만원 이하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며, 또 통신판매에 대해 청약철회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청약철회권을 적용해야 함. 통신판매중 소비자의 적극적인 구매거부의사가 없으면 매매가 성립하도록 하는 '네거티브옵션 통신판매'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되어야 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와 관련, 현행 법에는 다단계판매의 정의 자체가 판매업자와 알선 등 용역제공업자 또는 조직 개설자간의 거래로만 규정돼 있어 실제 '다단계판매'와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보완 · 명시해야 함(소비자보호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서 팔수있는 제품은 소비자판매가 30만원이하(잠정안)로 엄격히 규제하며, 다단계 판매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공장도가격(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이와함께 다단계 판매회사는 소비자에게 반품과 환불을 반드시 보장하여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최고 벌금 1억원에 징역 3년까지(잠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방식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모든 다단계 판매업자는 본사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을 해야하며 자본금(액수 미정)에 미달하거나 사기, 폭력 등 전파사실이 있는 사업자가 등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등록취소요건을 상공부고시로 정함(상공자원부).

: 경향 94.5.8., 10면; 조선 94.5.31., 11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8~49면) · 제8호(92면) 참조

○세법관련 입법의견

- 무자료거래에 따른 탈세 및 유통질서 혼란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온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5년내에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되 과세특례제도를 일시에 없앨 경우 영세업자들에게 미칠 충격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5년에 걸쳐 과세특례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임(강만수 재무부세제실장).
- 보석, 귀금속, 전자게임기, 고급모피, 가구, 시계, 사진기 등에 부과하는 특소세율을 내년부터 대폭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전 체가액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는 최저한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재무부).

: 국민 94.4.21., 2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3면) · 제94-1호(68면) 참조

○소비자보호관련 입법의견

-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현재 일정기간내에 제품이나 부품을 교환하여 주고 있는 가전제품, 자동차등 내구성제품에 대해 현금환불제를 도입할 계획과 아울러, 「집단소송에관한법률(가칭)」, 「의료분쟁사고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하고 「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임. 그리고 소비

자의 안전을 위해 공산품 검사를 종전의 품질위주에서 안전위주로 전환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녹색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임(경제기획원『94 소비자보호종합시책』).

- 「집단분쟁에관한절차법(가칭)」 시안을 마련, 피해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임(법무부).

: 국민 94.4.22., 6면

○ 외국인투자관련 입법의견

-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맞춰 외국인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해 금년중 「외자도입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외국인 투자시 금융세제 지원대상인 현행 83개 고도기술분야 내용을 재조정, '전략고도기술' 체제로 개편하고 이들 전략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과 부품 소재를 생산할 합작중소기업에 허용하는 3년 이내 단기자금 해외차입 한도를 현행 외국인 투자금액의 75%에서 100%로 확대, 하반기부터 시행함. 첨단기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5년간 전액면제의 법인세감면 시점도 현행 '사업개시년부터'에서 '당기순이익 발생시부터'로 바꿔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며 개별입지에 공장건설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장기임대하기로 함(홍재형 재무부장관).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85~86면) 참조

○ 정부입찰제도관련 입법의견

- 행정규제완화시책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입찰제도는 예산회계 법령 등의 부정당업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부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유망업체가 쌓아올린 국제경쟁의 기반이 붕괴되어 기업존립의 위기까지 우려되므로 이와 관련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제조물책임법(가칭) 제정의견

- 전제품 무상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애프터서비스 뒤에도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수리에 불만을 갖는 고객에게는 구입후 6개월이내 제품

에 한해 교환해 주기로 함. 또 전제품에 제조물 책임(PL) 배상보험을 도입하되 무상보증 등 소비자보호 대상에서 수출품과 국내업소용 제품을 비롯, 복사기나 자판기내부의 소모성부품은 제외되며 소비자들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받음(김광호 삼성전자사장).

: 조선 94.6.9., 11면

○ 조세 범처별법 개정 의견

-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빠르면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20~30%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고 현재 너무 과중해 실제 적용이 별로 안되고 있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벌금 징역형 등 벌칙은 크게 완화할 계획임(재무부).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각종 세금을 신설하는 것을 통제, 조세신설은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힘들 것임. 이와관련, 재정 및 조세정책이 중복 또는 상호충돌의 낭비없이 일관성있게 운영돼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의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세정책과 지방세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것이 필요함(홍재형 재무부장관).

: 동아 94.6.5., 7면; 동아 94.6.7., 11면

○ 주세법 개정 의견

- 주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대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경쟁제한적인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①연간 술생산량이 과실주의 경우 최소한 10kl, 탁주·소주·위스키는 20kl는 돼야 면허를 내주던 기준제조수량제도를 폐지하고, ②자본금요건을 삭제하며, ③농민·생산자단체가 맥주 일반증류주 위스키 브랜드등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주조사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던 규정도 삭제하고, ④주류제조장 이전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사전 신고제로 전환하되 다만 입지기준과 시설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94.5.6., 6면

○ 해외증시상장관련 입법의견

- 국내기업의 국제화 촉진과 싼 해외자본 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외증시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경제연구소등과 함께 연구 검토 작업에 착수하여 빠르면 올해 상반기중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담은 추진계획(블루프린트)을 마련할 계획임(재무부).

: 조선 94.4.18., 1면

◎ 農林 · 水產

○ 농수산물유통관련 입법의견

-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해 유기농산물생산자 조직과 연결되도록 지원하며 매점매석을 근절하기 위해 벌칙을 현행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긴급수급조정 조치권의 발동절차를 완화하기로 함(농림수산부).
- 농·수·축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조직을 통폐합해 별도 은행과 유통회사로 분리,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개별 입법화되어 있는 농·수·축산업 조합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며, 또 별도로 설립되는 '협동은행'에는 농·수·축협등 현재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만 포함시키고 기존 또는 새로 설립될 품목별 전문조합은 배제할 방침임(농림수산부).
- 농수축임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는 조합원인 농어민쪽에서 재편되어야 하고 단위조합 기능을 활성화하되 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을 줄여야 하며, 정부투자기관 역시 공공성 못지 않게 조직의 수익성을 따져 운영해야 할 것임(권원달 충북대교수).

: 동아 94.4.14., 11면; 국민 94.4.20., 7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재개정의견

-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시행이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것과 관련, 농수산물유통구조 전반에 관한 재점검을 통해 농안법을 전면적으로 재개정할 방침으로 개정 농안법이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게 됐으므로 이 기간중에 공영도매시장은 물론,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등 유사 도매시장까지 포함, 농수산물 유통구조와 시장의 운영, 제도 전반을 재점검, 유통개혁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농안법을 대폭 손질하고 중매인의 도매행위뿐 아니라 거대한 자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농수산물 가격 등을 좌우하는 지정도매법인이란 거상의 행위까지 포함해 농안법의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최양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 농산물 유통과정의 전면개정에는 찬성하지만, 거상들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중매인의 도매행위도 어느정도는 인정해야함(경제기획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수산물 유통을 현여건에서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규모공판장이나 과잉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형공판장외에서는 중매인이 도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법개정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시일에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임(농림수산부).
- 기업농의 등장 등 농업구조가 바뀌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므로 유통구조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보다는 직거래를 늘리는 등 유통채널을 보다 다양화시키며 ①모든 농수축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경매하고, ②산지에서는 농수산물의 등급화와 표준화, 규격화를 이루어 산매상이 물건을 안 보고도 중매인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③기존 도매시장의 시설미흡, 공영 도매시장의 부족을 해소하고, ④중매인의 중개 수수료도 대폭 현실화하는 등의 선행조건이 충족하여 개정된 농안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함(정복조교수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 농수산물 거래량의 70%를 차지우지하는 재래시장과 위탁중매인들도 있는데 모든 것을 도매시장의 중매인 잘못으로 보고 판매행위를 금지했다고 해서 복잡하기 짝이 없는 유통단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법논리만 적용해 도매시장을 운영하려 해서는 안 되며 상장 경매되지 않는 농수산물을 생산자나 도매법인으로부터 넘겨받아 파는 위탁중매인과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재래시장을 양성화해야 하고, 또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시설 관리를, 지정 도매법인은 운영을 맡고 있는 지금의 2원적 체계는 정부와 시장의 상인, 생산자단체를 뮤어 공공 법인을 설립, 이 법인으로하여금 중개와 경매 등의 모든 업무를 자유롭게 하도록 할 수 있음(이정수 사무국장, 농산물중매인조합연합회).

- 농수산물 같은 신선식품은 도매시장의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도 산매상의 의뢰를 받는 단순중개만으로는 모두 처분되지 않으므로 중매인의 판매행위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재래시장은 지금처럼 놔두면서 도매시장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함(양춘우 농수산물시장 지정도매인협회 부회장).
 -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는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인데, 중매인의 판매행위를 금지시키면 도매법인과 중매인 모두 상품의 소유권이 없어지므로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중개시장'으로 명칭을 바꿔야 할 형편으로 농민의 경우 오히려 판로가 좁아져 불리해질 수도 있음(김정기 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유통경제연구부).
 - 문제를 일으킨 중매인뿐만 아니라, 지정도매법인(거상)까지 개혁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거상들이 농산물 폭등의 주인공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또 가락동시장 뿐만아니라 재래시장도 유통구조 개혁대상에 포함시켜 이 기회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청와대).
 - 현실론에 근거, 중매인과 거상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함(농림수산부).
- : 조선 94.5.7.,1면; 세계 94.5.28.,7면; 서울 94.5.15.,5면; 조선 94.5.7.,3면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풍수해대책법 개정의견

- 축산 · 시설원예등 고가 · 고소득 작물에 대해 농 · 축협등이 민영보험차원의 농작물재해 공제제도를 개발, 보급하고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풍수해대책법」을 개정, 지원 범위를 현행 피해율 50% 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함. 피해지원단가도 비닐하우스의 경우 △철재는 현행 1당 4만8천원에서 5만3천4백원 △목재는 2만6천원에서 3만7천8백원 △죽재는 2만원에서 2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했고 농약대(3만원에서 3만7천6백원)와 대파대(88만원에서 2백29만4천원)의 인상도 6월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기로 함(농림수산부).

: 세계 94.5.9.,1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02~103면) 참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3년 이상 영농 종사자만이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격제한을 삭제해, 앞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에 대해서도 농업을 시

작하는 시점부터 조합원 자격 시·군에서 훨씬 더 넓혀 광역화함으로써 생산과 유통활동을 통합·계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임(농림수산부).

- 농업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농지법(가칭)」을 제정, 회사형태인 농업회사법인제를 도입하기로 함. 법인의 형태는 유한·합병·합자·주식회사로 하되 주식회사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 또 비농민과 합작설립하는 농업회사 법인은 농지매입시 최소한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제한조건을 부여하고 농지매각시에도 다른 농업회사 법인이나 전업농에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투기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임. 농업회사에 대해서는 영농업무용 자산취득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도 50% 면제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방침임(농림수산부).

: 조선 94.4.24., 11면; 동아 94.4.26., 11면; 서울 94.4.26., 9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정안

- ①각종 조세감면액 중 20%를 다시 농특세로 내게되어 있는데, 농어민관련 조세 감면부분은 모두 농특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제외 대상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팔 때 양도세 면제분 △10년 이상 된 목장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길 때의 양도세 경감분 △축산소득에 대한 첫 3년간의 소득·법인세 경감분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경감분, ②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세금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단위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출자금(1천만원한도)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분 △농어민이나 월급 60만원이하 근로자가 이들 기관에 맡긴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에 대한 면제분, ③서민 농가주택에 대한 농특세 면제 △전용면적 25.7평이하 단독·공동주택은 농특세 면제, 이보다 큰집은 취득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부과 △단,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3배(상업지역)~7배(녹지지역) 이하여야 함 △서민주택으로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때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는 조세감면분에 따른 농특세부과도 면제, ④공공사업용 감면분도 농특세에서 제외 △종교단체, 학교, 사회, 복지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분 △학교, 박물관에 쓰는 물품, 자선, 구호용 물품수입에 대

한 관세 경감분(농림수산부).

: 조선 94.5.1., 11면

○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관련 입법의견

-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①농지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진흥지역 밖의 예외적 소유상한 확대,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의 일원화, 부재자 주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농지 이용증진 사업의 예외적 인정 등은 공청회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②주요 방향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소유상한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두며, 농지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통작거리(20km)를 폐지하는 등 농업경영이 목적이면 소유 규제를 없애기로 하고, ③부재자주나 농촌에 살더라도 농업을 하지 않으면 일정 규모(1정보) 이상의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 등에서 매수하도록 함. ④그러나 농지의 교환, 분합, 임대차 등으로 농지의 규모화를 피하면 농지처분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함. 기업형태의 농업법인제도를 도입,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외부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기로 하며, ⑤농지(준농림지역) 15만ha, 산지(준보전임지) 40만ha 등 모두 55만ha 정도의 농어촌산업 지역을 지정, 이들 지역에 2,3차 산업을 유치하기로 함(농림수산부).

: 서울 94.5.27.,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93면) · 제13호(79~80면) · 제94-2호(106면)
참조

○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의견

-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 종래 농지전용을 하려면 신축 부지의 30~70%만 농지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잡종지와 산지등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모두 농지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5월부터 실시하기로 함. 더욱이 투자선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수조원에 이르고 있어 잘못하면 부동산투기가 폭발될 위험도 있고 농지전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투기예방도 강화해야 함(한국일보 해설).

: 한국 94.4.22.,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06~107면) 참조

○ 협동은행 설립 관련 입법 의견

-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을 분리, 가칭 '협동은행'으로 통합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함. 농·수·축협의 신용사업 분리, 통합을 중앙회차원에 국한시켜 단위조합은 상호금융 등 기존 신용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군지부는 '협동은행'의 지점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임. 또 별도 설립되는 '협동은행'에는 농·수·축협 등 현재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만 포함시키고 기존 또는 새로 설립될 품목별 전문조합은 배제하며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포함,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농림수산부).

: 국민 94.4.20., 7면

○ 建 設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의견

- 대법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시행일을 대상사업의 착수시점으로 규정해 놓고도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인 90년 1월 1일 이전에 개발에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과 시행령이 서로 모순된다고 판시함(한겨레 신문).

: 한겨레 94.4.15., 1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7면) · 제10호(96면) 참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의견

- 덤프 및 박서트럭을 건설기계류에서 제외, 교통부 소관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이관할 방침이었으나 이로 인해 중기업체들이 차량사용년수단축, 세부담증가, 차량검사기간 단축, 지입료 인상등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기존 중기업체들이 이에 적극 반대함에 따라 이 업무의 교통부 이관문제를 2~3년간 유보하기로 함(건설부).

: 세계 94.5.20., 7면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

- ①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시안은 토건업면허의 경우 현행은 기술사 1인을 포함한 건축토목분야 기사 1~2급등 모두 20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술사1인을 포함한 10명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하고, ②이때 기술사를 대신해 기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도 고용할 수 있는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고, ③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도 현행은 관련분야 1급기사 2인을 포함한 8인이상의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절반으로 줄여 4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으며, ④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준도 건축공사업의 경우(법인)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25개 전문건설공사업(법인)은 현행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며, ⑤포장·조경·준설·철강등 4개 특수건설업종중 포장공사업 면허는 폐지하고 나머지 3개 공사업 면허기준은 기술자의 의무채용인원을 대폭 줄이는등의 방향으로 크게 완화하기로 하고, ⑥전문건설업은 현행 19개 업종에서 건축물조립,온실설비,강구조물공사,승강기설치 설비공사업등 6개업종을 추가해 25개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임(건설부).
- 전문건설업의 경영기반안정을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하나의 주된 전문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로 구성되는 공정이 단순한 공사)의 범위를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정도로 상향조정할 방침임(건설부).
- 건설업면허개방등 여건변화에 따라 소규모복합공사를 전문공사로 간주하는 「건설업법」 시행령 규정(18조2항)을 더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으며 이 조항이 일반건설업자는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자는 단일공정인 전문공사를 각각 고유의 수급영역으로 하는 「건설업법」(12조)의 업역구분원칙에 어긋나는 것임(대한건설협회).
- 소규모복합공사는 모법에 근거한 부대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며 이 제도가 전문건설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데다 그 동안의 물가 상승등을 감안할 때 소규모복합공사의 영업범위를 1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함(대한전문건설협회).
- 오는 7월 하순부터 공항, 케이블카, 항만, 댐, 방파제, 상·하수도, 발전설비,

가스설비, 산업설비,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대규모 산매점, 16층이상건물 등을 대상으로 부실시공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주요부분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건설업자나 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한 경우를 비롯, 건설업체 위법행위 제재조치도 기존영업정지 2~4개월에서 6~8개월로 크게 강화됨. 이와 함께 시나 읍지역이라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곳과 농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은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농립·축산·어업용건축물을 직접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되며 건설업 전문화차원에서 특수건설업중 포장공사업은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에 조립공·강구조물·승강기설치·온실설치공사업을 신설하고 건설업면허기준도 완화, 건설업자 상시보유 기술인력을 토목건축공사업은 20명에서 10명, 토목이나 건축공사업은 8명에서 4명, 특수건설업은 10에서 5명, 전문건설업은 기능사 2인으로 대폭 하향조정함(건설부).

- 전문건설공사 하도급을 정부에 하위로 통지했을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한 재해를 발생한 때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와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기준을 신설, 또 일괄하도급 금지조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영업정지 6개월로 대폭 강화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는 현행 과징금 규정을 없애는 대신 영업정지 8개월로 대폭 상향조정함. 이와 함께 건설업 면허기준이 미달한 때와 1년이상 휴업한 때는 현행 영업정지 4개월에서 6개월로 높임(건설부).

: 세계 94.4.15., 7면; 국민 94.5.17., 7면; 조선 94.6.2., 10면; 세계 94.4. 30., 7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4면) 참조

○건설업제도관련 입법의견

- 「건설업법」의 개정으로 건설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잘못 인식되어 시공능력이 없는 중소건설업체를 양산시켜 놓았고, 또한 건설현장에는 지도·감독기능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불법과 부실시공이 판을 치고 있는 바, 근본적인 면허

체계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9개항의 개선안을 건의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공동주택 · 빌딩관리의 통일적인 기본법(건물관리법) 제정의견

- 주택관리분야가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또한 통일적인 법률이 없이 「주택건설 촉진법」의 몇 개 조항에 의해 땜질적으로 운영되어온 바, 공동주택 및 빌딩관리의 발전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현행 법령 및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기능과 성격을 참고로 삼고 또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동주택이나 일정면적 이상의 빌딩이 동일 체계로 통합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건물관리법」의 제정을 건의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민간자본을 주택건설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다가구주택소유를 이유로 중과세했던 주택임대업을 양성화하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①오는 7월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새로 짓거나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의 임대업을 할 수 있어서 임대사업자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②임대주택의 임대차에는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주택의 보수조건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며, ③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주택건설관련 기금의 지원을 받는 영구 임대주택과 사원 임대주택의 경우 각각 50년과 10년 △임대사업자가 지은 일반 임대주택은 5년 △집을 사서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은 3년으로 각각 정하고, ④영구, 사원, 일반 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매입 임대주택은 이 혜택이 없으며, ⑤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뒤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영구 및 사원 등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 후 분양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며 △민간 주택은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 당시의 임차인이고, ⑥임대주택 분양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하기 10일전에 해당 시 · 군에 신고해야 할 임대조건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외에 분양시기와 분양가격의 산정 기준을 추가하였고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하는 가구 수의 기준도 현 20가구 이

상에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⑦임대 가구수가 3백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은 전문주택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해야 하고,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려면 관리인원과 장비를 갖춰야 함(건설부).

: 경향 94.4.23., 9면; 서울 94.4.23., 9면

○ 입체도로제도 도입방안관련 입법의견

- '입체도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도로의 상하공간을 '도로입체구역'으로 설정, 건축물의 신·증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함(건설부).

: 세계 94.6.5., 7면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의견

- 서해안 경제권시대 및 지자체 실시에 따른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관련부처 협의등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제정안은 ①지방 대도시권과 신산업지대권등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고 그중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복합단지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②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형, 균형개발형, 도농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정하되 특히 낙후지역형은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등 4개지표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하위 20%에 속하는 지역중에서 시·도별로 총면적의 10%이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③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이 직접 개발사업 계획을 마련,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지는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관광단지, 문화단지, 유통단지등으로 정함. ④또 국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지역개발법인에 대해 민간의 경영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출자한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며, ⑤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상공부장관이 매년 작성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생산실적이 취약한 공단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건설부).

: 국민 94.5.30., 7면; 경향 94.5.31., 7면

○ 지하수법시행령 제정안

- 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지하수자원이 고갈되거나 지반침하, 지하수오염등이 우려되는 인구밀집지역과 공장지역등을 시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이 구역에서는 지하굴착공사나 지하유류저장고, 폐기물매립장 및 집단묘지등을 설치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②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한 지하수나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수개발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며, ③ 하루 30톤 이상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지하수개발과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시후 15일 전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④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 가정용이나 소규모 개발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하수는 △ 이용량 하루 30톤 이하 △ 가정용이나 군사용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단지의 비상급수시설 △ 농수산업을 위해 하루 1백 50톤 이하를 개발하는 경우 등임(건설부).

: 한국 94.4.29.,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09~110면) 참조

○ 지하수법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처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이에 따른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① 하루 사용량 30톤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취수정 주변에 콘크리트 보호공을 설치하고 지표아래 3m까지는 불투수성 시멘트로 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② 특히 이미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다 중단된 지하수폐공은 불투수성 시멘트로 완전히 메워 원상복구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함. ③ 하루 사용량 30톤 이상의 지하수를 새로 개발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생활 및 농업공업용수등 모든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는 연간 1회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④ 「지하수법」 시행전에 이미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도 6월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에 적절한 시설기준을 갖춰 신고를 마쳐야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하수공 강제폐쇄 등의 제재를 가함. ⑤또 지하에 유류나 유해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사람은 지하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해야 하고 지하저장시설은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유리섬유를 사용, 이중벽구조를 갖춰야 함(환경처).

: 서울 94.5.5.,21면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의견

- 대부분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6대도시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택지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현재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토지거래허가와 택지취득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하나만을 받도록 하든가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고 도시설계지역으로 묶여있는 초과택지를 이웃하고 있는 여러 필지와 공동개발해야 할 경우 토지소유주들간의 의견이 상충돼 건물을 제때 지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이들 초과택지에 대해서는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임(건설부).
- 종교활동의 애로요인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신앙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교회 성당등이 종교활동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할 경우 개발의무기간을 현행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하고 또 종교시설 밖에서 부목사 전도사등 성직자의 사택용 택지를 2백평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도 부과하지 않음. 또 종래 종교단체가 신도들을 위한 주차장등 토지취득 허용범위를 종교시설물 경내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종교시설물로부터 3백m이내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하며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임직원의 사택용 택지를 2백평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함(건설부).

: 세계 94.5.5.,9면; 국민 94.6.9.,2면; 한국 94.6.10.,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0~91면) · 제8호(111면) 참조

○ 하수도법 개정 의견

- 하수도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됨에 따라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

하여 서울·부산 등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38개 도시의 80만 가구 재래식 화장실은 97년까지 수세식으로 바꾸고 이를 38개 도시의 연건평 1천6백m² 이상인 8천5백76개 건물은 오는 9월부터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1천6백m² 이상인 신·증축 건물의 경우 하루 하수배출량 1톤을 기준으로 30만원 가량의 처리부담금을 건축허가 때 내야 하며, 이 재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 쓰게 함. 개정안은 도지사·시장·군수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세우도록 하고 서울과 직할시 시장은 일반하수도의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환경처).

: 한국 94.5.4., 2면

○하천법시행령 개정안

- 지금까지 하천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작물 설치 등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점용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로 그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은 준용하천 내 사유토지를 점용할 경우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가 하천공사를 할 경우 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수 있는 한도를 총예치의무금액의 50%에서 100%로 높이는 등 하천관리규정을 국민편의 위주로 개정하기로 함(건설부).

: 한겨레 94.5.14., 7면

◎科學技術·交通·遞信

○과학기술정책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과학기술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원으로 격상하고 국민총생산의 5%를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하는 기본법 제정과 함께 기존의 「과학기술진흥법」등 1백여개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과 2백여개의 관련 시행령, 규칙에 대한 정비작업도 병행할 방침임(당정).

: 서울 94.6.1., 2면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 '강제견인' 대신 '견인예고제'를 실시하고, 중앙선침범·음주운전등 중요사안의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을 경우외에는 면허정지처분 대신 운전자의 희망에 따라 이를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국도 및 고속도로속도규제조항을 구역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임(경찰청).

: 경향 94.5.4.,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12면) 참조

- 「도로법 제47조에 “도로에 바닷물등을 흘려 도로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의 범칙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일행위 반복자에 대하여 범칙금가중 및 벌점강화의 내용을 추가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에 “운행중 적재물의 유출우려가 있는 활어운반차량등의 적재장치는 반드시 유출을 막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건의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와 수도권지역의 중대형 자가승용 차(1900cc이상)에 대해 먼저 차고지 증명제를 96년부터 실시한 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대상 승용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나, 한옥밀집지역등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주택에 부설된 차고나 마당뿐아니라 반경 1km내에 있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기타 공지 · 유휴지등도 차고지로 인정하기로 함(당정).

: 동아 94.6.7., 30면; 경향 94.6.7.,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4면) · 제11호(97면) 참조

○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안

-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절차와 감청 · 검열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등을 규정하고 발신전화번호 확인서비스의 제공근거를 마련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①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절차규정의 경우 내국인의 통신에 대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이 고등검찰청 검사를 통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외국인의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계획서를 국가안전기획부에 제출,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②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되 긴급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못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집행하고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청·검열 내용을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하며, ③이와 함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은 자는 집행과정에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④특히 집행기관은 그 경위와 취득한 결과를 조서로 작성하고 비밀보호와 훼손·조작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국회에 대한 보고나 재판때 증거사용등 사후 통제, 감시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⑤또 정보수사기관이 집행과정에서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때는 법원의 허가서등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분증표를 함께 제시토록 했으며 위탁대상기관을 일반통신사업자(한국통신, 데이콤)와 5급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우체국으로 제한하고 있고 ⑥전화폭력예방을 위한 발신전화번호확인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전화가입자의 신청을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체신부, 법무부).

- 전화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나 그 시행령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문제는 이러한 입법 취지가 그 시행령안을 통해서 충분히 살려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정보·수사기관의 부당한 도청을 막아낼 수 없을 것임(한겨레신문 해설).
- 정부가 지난달말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이 국민의 사생활보호와 정보정치 근절이라는 모범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해 모범을 사문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행령안의 전면수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함. 시행령안 제8조에서 긴급도청이나 검열의 경우의 영장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영장주의를 사실상 배제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고 9조는 영장없이 긴급도청이나 검열로 취득한 자료를 검사와 안기부장의 지휘로 폐기하도록 규정, 긴급도청 및 검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 피해자의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근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고 또 시행령안 8조4항이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 및 재일동포로부터의 동시다발적인 송신이나 통신은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도청검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방당사자가 내국인이면 반드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한 모범 제7조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시행령안에 '도청 최소화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안보목적 도

청 검열의 영장발부 판사를 임의로 바꿀 수 있게 한 점 △도청 검열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방법과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누락된 점도 문제 조항임(민주당).

: 세계 94.4.28., 27면; 한겨레 94.4.30., 3면; 동아 94.5.15.,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10면) 참조

○통신사업구조개편관련 입법의견

- 유선통신사업자 즉 테이콤의 최대주주 지분은 현행처럼 10%로 유지하고, 이동통신 등 무선사업자는 전체의 3분의 1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제한하나, 유·무선통신사업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무선통신사업자가 유선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지분을 현재의 유선통신사업자처럼 10%로 낮추는 등의 제한을 검토해야 함(통신개발연구원『통신사업구조 개편방향』).
 - 유선망사업의 경우 공공성·공익성이 상당히 커 민영화한 통신업체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무선통신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을 유선사업자와 같이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임(윤동윤 체신부장관).
 - 유·무선통신사업자를 법률상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면서, 대주주 지분한도를 각각 다르게 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남(한겨레신문 해설).
- : 한겨레 94.4.21., 12면

◎環境·保健

○GCR관련 입법의견

- 범세계적 지구환경보전 움직임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경영 표준인증심사기관과 감사자양성기관을 법인형태로 설립하고, ISO가 우선적으로 제정할 환경영제체계규격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채택하는 등 국내인증 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이와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 호골을 원료로 한 약품의 제조와 호골 함유제품의 유통을 내년 3월부터 금지하기로 함(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

: 조선 94.4.12.,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10~111면) 참조

○ 공중구강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날로 늘어만 가는 구강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중구강보건법(가칭)」을 제정해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활용도를 높여서 전국민에게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공중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과의사를 채용하고, 기능이 축소되어 가는 시·군·구 보건소내의 모자보건센터 내의 치과진료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 개편해 대규모 예방치료와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함(한겨레신문 해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실시 의무화, 일년에 한번씩 학생·노동자 등에 대한 정기구강검진 실시,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 설치, 어린이들에게 구강건강수첩 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공중구강보건법(가칭)」 시안을 마련함(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 한겨레 94.4.12., 10면; 한겨레 94.6.7.,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11면) 참조

○ 금연법(가칭) 제정의견

-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건강증진법(가칭)」의 정신에 적극 호응, 효과적인 금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쓰고 담배광고 규제등 포괄적인 「금연법(가칭)」을 제정,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함(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국민 94.5.30.,

○ 노인건강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노인건강관리법(가칭)」을 제정하여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등을 위해 집에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치료제」를 신설하며 장년기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보건교육등 사업도 강화하기로 함(보사부).
- : 세계 94.5.9.,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70면) 참조

○ 뇌사및장기이식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뇌사자가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한해 뇌사를 허용할 수 있으나 뇌

사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에는 반대함(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장).

- 국내 장기이식 실적은 선진국에 비해 적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이 갖추어진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국내 의료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장기이식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국가관리의 보장만 있다면 보사부의 발표에 찬성하며 장기 기증을 둘러싼 잡음을 막기 위해서도 국가차원의 개입을 반대하지 않음(김수태 서울대교수).
- 뇌사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기의 완벽한 기증행위와 보관 수송 제공등 일련의 이식전과정을 관장하는 장기관리 기구를 정부차원에서 설립하는 일임(송명근교수 서울중앙병원).
- 뇌사를 인정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장기의 암거래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뇌사입법 반대론자).
- 현재 한국신장협회같은 민간단체에서 이들을 서로 연결, 혈액형 및 조직형을 맞추어 주는 일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찾는 실정이어서 전국규모의 전산망을 구축, 보다 더 많은 환자가족들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함(방병기 교수, 강남성모병원)

: 조선 94.4.11., 2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12면) 참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고철, 곡물, 사료품목을 취급하는 시설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추가지정해 입법예고함(환경처).

: 세계 94.5.29.,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41~42면) · 제13호(90면) 참조

○ 산업의제도관련 입법의견

- 산업재해예방의 하나로 내년부터 각 시·도 산업안전공단에 직업병등 산업의 부문의 전문의를 파견하는 '산업의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예방과 대책안'을 의결한 바, 연내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의과대학에 산업의학, 산업간호학등의 과목을 신설하고 일반대학에도 산업위생학과, 안전공학과 등의 학과도 신설하고 또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도 합리화해 98년 이후에는 산재보험

사업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행정쇄신위원회).

: 한국 94.4.28.,2면

○ 산업재해관련 입법의견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앞으로는 일반건설업체에도 협용할 방침이며,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허위통지는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불실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와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또 일괄하도급 금지조항은 영업정지 6개월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는 과징금 규정을 없애는 대신 영업정지 8개월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건설업 면허기준이 미달한 때와 1년이상 휴업한 때는 현행영업정지 4개월에서 6개월로 높여 제재를 대폭 강화함(건설부).

: 한국 94.4.28.,2면; 세계 94.4.30.,7면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각종 소음과 함께 새로운 공해요인이 되고 있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원인별로 건설 및 생활진동규제 기준과 교통진동한도를 새로 마련 입법예고함. 주거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인접지역(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등의 경우 주간(오전 6시~오후10시)이 65dB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6시)이 60dB이하로 하며, 작업시간 조정 및 방음·방진시설설치등 개선명령을 내리고 위반시 조업중지 및 허가취소하며, 교통진동한도 초과시 환경처가 시·도지사에 속도제한이나 차량통행제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생활진동규제지역을 진동규제지역으로 함께 지정하여 소음과 진동을 동시에 규제할 방침임(환경처).

-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항공기소음공해에 따른 대책 수립과 함께 각종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보호에 더욱 힘써야 함(세계일보 해설).

: 국민 94.5.26.,18면; 세계 94.5.28.,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5면) 참조

- 서울시 일원의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적·신체적 피해가 심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항공기 소음공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 육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법시행규칙 제274조에 의하여 시설물설치 제한과 시설물 용도제한을 합으로써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인 바 동조항의 건축규제 조항을 기준의 주거지역에는 적용하지 말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약사법시행령 개정의견

- 약대의 한약관련 과목중 한방약리학, 한약자원유통학, 한약저장학은 학문으로 정립되지도 않았고, 교과서도 대학에서 가르칠 교수도 없으므로 과목 지정이 잘못되었고 제한없이 한약을 다루는 한의사들이 한약감별시험을 보지 않는데도 약사들에게만 한약감별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함(대한약사회).
- 한약조제약사가 앞으로 배출될 한약사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짐에도 최소한의 검증으로 한약사와 같은 막대한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며 한약사제와 관련, 한약사수등 수급조절 및 설치대학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대한한의사협회).
-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약사의 한약조제 자격시험을 본초학, 한방약제학, 한약조제지침서 등 필기 3과목과 50종 이상의 한약재 감별력을 평가하는 실기로 나눠 실시하도록 하고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응시자에게 자격을 주도록 함. 이밖에 한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반드시 본초학등 한약조제관련 5개 분야 20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함.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판매대에 대기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유통체계 일원화를 위해 종합병원에는 의약품도매업소가 우선적으로 약을 공급하도록 규정함(보사부).

: 세계 94.5.17.,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79면) 참조

- 「약사법」개정(1994.1.7.)으로 인하여 “한약”(제2조 5항)과 “한약제제”(제2조 6항)가 분리 규정됨으로서 한약방에서 한약제제(우황청심원, 숙지황등)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3천 한약업자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되므로 대한한약협회의 개정 건의안을 제출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예방접종사고관련 입법의견

- 예방접종약품의 유통·보관체계를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모든 예방약품을 1인 1병단위기준으로 고치는 한편 보건소에 예방접종 전담 관리의사제도를 도입, 간호사·간호조무사들이 접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고,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가칭)」 또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일선 보건소 및 일반 병·의원의 모든 예방접종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임(보건사회부).

: 서울 94.6.4., 23면

○ 음용수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수도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음용수수질기준을 통일하고 약수터 등 공동음용시설의 수질오염행위를 금지하며, 현재 다소 강화돼 있는 광천음료수의 수질기준을 수돗물과 거의 같게 하고 또 광천음료수를 개발할 경우 환경처에 미리 글착신고를 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 환경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환경처는 산하에 심사위원회를 개설,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또 광천음료수 영업자에 대해 총매출액의 10~2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하기로 하고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또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글착자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개발이 중단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게 함(환경처).

: 서울 94.4.27., 21면; 한국 94.4.27., 29면

○ 의료법 개정의견

-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이 영세성을 탈피하고 국민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2인 이상의 의사가 인력 시설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연합의원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며, 앞으로 대도시에서 대형민간병원을 설립할 경우 해당의료법인은 농어촌지역에도 10%정도의 병상을 갖춘 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당정).
-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으로서 국내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의료법인 또

는 비영리법인 자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등 투자제한 요인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 등 실질적인 투자보장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설립자를 의료인 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영리법인까지 확대하며 투자과실금의 송금을 보장함. 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그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켜 국내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조병률 보사부의정국장).

- 구체적인 대책으로 △의사보수교육 강화 △의료 치료비(수가)체계 개선 △중소병원의 특화 및 전문화, '동네병원'으로의 육성 △의료기관간 협조를 통한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 △시설투자확대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과정 개선 △병원 자동화 등이 필요함(의료계).

: 동아 94.4.26., 29면; 경향 94.4.26., 21면; 세계 94.5.24.,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3~74면) · 제6호(100면) · 제7호(71면) · 제4호(40면) 참조

○ 의료법시행령 개정의견

- 병원의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마련,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차 혀가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병원 입원환자가 하루 30명부터 1백명까지는 휴일이나 야간에 당직의사 1인을 두도록 하며,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도록 하며, 또 간호사는 입원환자 30명까지는 2명을 당직배치하고 2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추가하도록 함. 또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새로 포함시켜 1년까지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함(보사부).
-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병원의 모든 진료기록을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되, 처방전의 약이름처럼 원어로 표기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진료기록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는 않기로 함(보사부).

: 세계 94.5.21., 22면; 한국 94.6.3., 3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63면) · 제94-2호(112면) 참조

○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의견

- 약국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8일부터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경

우 환자의 부담 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의 일시적 실직에 대비, 3개월까지만 종전 직장의 피보험자 자격을 주던 것도 6개 월로 늘리며 각 조합 보험료 수입의 20%범위에서 노인의료비 및 고액진료비에 대한 공동부담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보사부).

: 조선 94.5.19.,30면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법안의 핵심은 분쟁기금을 조성해 피해환자에게 보상해주고, 각 시·도별로 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임(보건 사회부).
- 사적 계약인 의료문제에 국가가 간섭할 이유가 없으므로 분쟁기금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자는 보사부 안에 반대함(경제기획원).
- 기구축소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의 시·도 사무국 설치와 분쟁기금 관리를 위한 별도 법인이 불필요함(총무처).
- 국가의 일부부담은 피임과 예방사업에만 한정함(재무부).
-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를 반대함(내무부).

: 조선 94.5.15.,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62~63면) · 제7호(71면) · 제13호(92~94면)
참조

○환경관리관련 입법의견

- 환경처의 직제개편은 각 환경관리청의 관리구역이 수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일선기관의 견의에도 불구하고 관리구역이 거의 바뀌지 않아 환경오염을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관리청이 행정구역이 아닌 수계별로 지역을 관리했다면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음(한겨례신문 해설).

: 한겨례 94.5.25.,16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①환경처장관이 환경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10년 주기의 장기환경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에 새로

운 환경기술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으며, ②이 법에 의해 개발된 환경기술을 정부가 정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③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유지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우선적으로 기술지원을 하며, ④환경관리공단이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 기술을 보완하고, ⑤환경마크부여상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환경처).

- 지난 3월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4월 마라카시 각료협정으로 철강, 비철금속, 석유, 화학등 국내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내 이견으로 GR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라 환경 관련 국제무역규제조치인 그린라운드(GR)에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환경보호기준을 강화하고 환경공해 및 오염방지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지원육성법(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함.

: 한겨례 94.4.26., 2면; 세계 94.5.23.,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41면) 참조

◎法院·法務

○경매제도관련 입법의견

- 「민사소송법」에 경매부동산의 원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를 할 경우 경락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제한 규정이 있지만 경락자는 아무런 제한없이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들이 대금납부시간을 벌기 위해 이유없는 항고를 남발함. 경락인의 항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경매가 민사분쟁의 종착지인 만큼 최대한 권리구제를 해주려는 취지인 데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크므로 무분별한 항고를 막기 위하여 대금납부에 지연이자를 물리든가, 채무자등의 항고처럼 보증금을 내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함(한국일보 해설).
- ①미등기 건물도 당연히 국민 개개인의 재산이므로 법적으로 재산권을 인정, 재산권 공시라는 등기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하며, ②미등기건물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매등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미필건물과 무허가 건물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제도를 개선하고, ③행정기관이 무허가건물 대장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등기절차 개선은 「등기법」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 변경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음(대법원).

- 대법원의 제도개선 취지는 자칫 불법 건축물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 행정 목적달성의 장애가 우려되며, 건축주들이 등기제도 개선의 취지를 악용, 무허가 건물이 양산될 것이 우려됨(건설부, 내무부).

: 한국 94.4.18.,29면; 한국 94.5.9.,30면

○공공변호사제관련 입법의견

- 군법무관 초과 인원을 무변촌과 영세민의 법률구조를 위해 설립된 '법률구조공단' 산하 전국 지부·출장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이와 함께 별도의 '무변촌변호사 제도(가칭)'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당정).

: 경향 94.5.21.,1면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 ①대법원 구성에 관한 것으로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동의과정에서의 청문회제도는 필수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국회법」과 「법원조직법」의 명문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며, 또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요청되며, ②법관회의의 설치근거 뿐만 아니라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법원조직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③원래 법관은 헌법상 지위나 담당업무의 특성상 그 신분을 유지한 채 다른 국가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대상이 아니며, ④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개정안은 지나치게 고위직 법관만 구성하는 것을 예정하여 각 직급의 법관들과 법조계,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확대해야 하며, ⑤법관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도입은 부적절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101면) 참조

○부동산등기대장일원화관련 입법의견

- 내년부터 부동산관련 민원창구를 '부동산 등록과(가칭)'로 단일화하고, 행정관청과 법원등기소로 분리·운영되어온 부동산관리체계가 사실상 일원화하는 '부동산등기와 대장관리업무 일원화방안'을 확정하여 금년중 「부동산등기법」, 「지적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함(행정쇄신위원회).

: 세계 94.4.15., 2면

○부동산등기법 개정의견

- 준공검사 미필 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률을 6월까지 개정, 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임. 그러나 보존등기를 하더라도 등기부에 '무허가 건물'이나 '준공검사 미필건물'을 표시해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과 구별하기로 함. 이와 함께 2개의 아파트나 사무실 벽을 트는 방법으로 한 건물로 개조했을 경우에도 등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임(대법원).
- 대법원이 준공미필건물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이 대법원의 방침대로 개정·시행된다면 불법행위와 권리보장간의 충돌로 생기는 소송사태와 불법·위법건물의 양산사태가 발생하고 적법건물과의 형평원칙에도 어긋나며 미준공건물에 대한 보완 시정방안도 필요함(한국일보 칼럼).

: 국민 94.5.2., 18면; 한국 94.5.7.,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102~103면) 참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의견

- 법 제1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보증인의 자격을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중요사업인 땅건설로 인한 침수로 한사람도 거주하지 아니한 동·리가 많이 생기게 되어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동·리는 당해 읍·면장이 전거주이주민 중에서 보증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 함.

: 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83면) 참조

○ 사법제도개혁관련 입법의견

- 「법원조직법」과 관련하여 ①법률서비스의 확충 등을 위해 일정기간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한 법학자나 정부기관에서 법률 관련 사무를 본 공무원들에게 실무법조인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②특히 전문분야에 대한 재판에는 관련 전문가가 재판부에 참여하는 '참심제'의 도입 등도 검토하며, ③법관의 직급제 및 전보 승진제 폐지, ④법관회의의 의결기구화 등이 이뤄져야 함(차용석 한양대학교 교수).
-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해석기관인 만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독일, 프랑스와 같이 우리나라로 법학교수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의 자격기준(헌법)을 바꿔야 하며, 이밖에 헌법소원을 낼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폐지돼야 함(조병윤 명지대교수).
- 「검찰청법」과 관련하여 개개인이 독립된 관청인 검사들을 관료조직으로 얹어매는 검사동일체원칙은 폐지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여러 분야의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김일수 고려대교수).

: 동아 94.5.29.,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2호(107~110면) · 제13호(100~103) · 제94-2(113~115) 참조

○ 성희롱관련 입법의견

- 선진국처럼 성희롱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물론 사용자에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 성희롱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규정이 요청됨(이문우 대표, 여성의 전화).
- 직장내 성희롱은 상대에게 굴욕적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개연성이 높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큰데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은 성희롱규제까지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안에 성희롱 범위에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조항 등을 신설해야 할 것임(강기원변호사 성폭력

위기센터대표).

- 적어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주가 성희롱에 대한 방지책과 책임을 지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명시한 사규도 제정해야 하고 검찰이나 노동부는 피해를 입은 여성의 섬세한 감정을 고려하면서 원상회복시켜주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정무제2장관실을 확대개편한 여성부나 여성청을 신설하여 그 산하지방조직이 남녀고용평등차원서 성희롱문제를 전담해야 함(박원순 변호사).
-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예방 대책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적 조치가 뒤따라야 함(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들이 대인혐오증세를 보이는 등의 질환으로 발전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책임도 확보돼야 하며, 노동부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기에 사업장내 고충처리기구 설치, 법적보호장치 마련등에 힘써야 함(최영애 성폭력 상담소 소장).

: 세계 94.5.2., 8면

○ 양심선언자보호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내부고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심선언은 내부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항수단이며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이들의 보호는 필수적이므로 더 늦기 전에 이들에게 가해진 불이익 조처를 철회하고 형벌을 취소하는 일괄적인 명예회복 조처가 필요하고, 특히 양심선언 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백승현 변호사).

: 한겨레 94.5.10., 3면

○ 입양특례법 개정의견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불법·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개인 친자입양을 막기 위해 현행 「입양특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방침임. ① 입양대상 아동이 생기면 먼저 호적과 출생증명서를 만든 다음 이를 제적처리하여 본적지 행정기관과 법원에 보관하도록 한뒤 입양가정에서 친자로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며, ② 불법·비밀입양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두고, ③ 양육보조금제도를 도입해 입양가정에 매달 일정액의 양육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보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의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형법」상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주요 범죄들의 법정형이 너무 높아 형사법체계를 교란하고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범죄의 법정형을 크게 낮추고 특별법을 대부분 폐지하는 쪽으로 개정법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①공무원뇌물수수죄는 '징역10년 이하'로, ②뺑소니사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형법」에 통합되면서 부상은 '징역10년 이하', 사망은 '징역2년 이상'으로, ③「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액수를 불문하고 '징역10년 이하'로 일반적인 횡령 및 배임은 '징역5년 이하'로, ④재산국외도피죄는 폐지하고, ⑤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 등 성관련범죄는 「형법」에 흡수하되 형량은 그대로 두며, ⑥이밖에 유괴사건에 대응한 약취·유인죄도 '징역10년 이하'로, ⑦ 공무집행방해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자는 것임(법무부).

: 경향 94.5.15.,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104~105면) 참조

○ 특허제도개선관련 입법의견

- 특허청이 주장하는 기술판사제도입대신 사법시험 합격자중 국내외 연수를 거친 사람에게 특허분쟁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전문변호사영입, 특허전문재판부 운영, 감정제도 활용, 기술 설명회등 집중심리방식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대법원).
- 특허쟁송사건의 심급구조를 특허청·특허법원·대법원등 3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허청은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기능 중 심판소기능만 수행하고 신설된 특허법원이 항고심판기능을 맡아야 하며 특허법원의 재판부는 기술항고부, 무효부, 법률항고부 등을 우선 설치하고 독일처럼 의장항고부, 상표항고부, 실용신안항고부 등으로 세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재판부에 기술판사를 두고 법률판사가 함께 심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판사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기술판사의 종신제를 고려해야 함. 특허법원판사의 양성방안으로는 미국의 법학교육제도의 도입과 판사선발제도를 검토하는 등 기술분야의 현직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판사로 임명해야 할 것임(황이남 미원중)

양연구소 부소장, 과학기술청년회『특허제도 개선방향』심포지엄).

-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특허소송절차만을 대법원 단심제에서 고등법원·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서울고법에서 기술자문관, 기술조사관 등을 통해 판사가 전문기술지식을 공급받겠다는 것은 제3자가 법관의 판단을 좌우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공개재판주의를 위반하는 것임(특허청, 변리사회).
- 장기적으로 특허법원을 설치하되 이에 앞서 고등법원에 특허부를 두고 일반법관외에 과학기술전문가를 기술판사로 임명, 재판을 맡도록 하고 기술판사는 특허청 항고심판관, 과학기술인, 변리사등 기술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하면 됨(강구철 국민대교수).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전문가에 의한 신속·정확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수적임(대한변리사회, 과학기술청년회).
- 특허항고심판을 일반법원으로 이전시키는 안(대법원측)과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안(과기계측)은 모두 상호간 주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일단 특허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일반법관의 전문성결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특허심리관의 준사법관으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임(성낙인 영남대교수).
- 당초 특허심리관제도입과 특허청 항고심판소폐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특허청 및 변리사회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행 항고심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에 관한 법안을 수정, 국회에 제출함. 특허소송의 심급확대로 인한 소송지연을 막기 위해 특허나 기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재야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 특허소송을 전담하게 할 방침임(대법원).
-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 부칙 제4조제2항은 현행 특허심판구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특허청에서 1,2심을 심결한뒤 최종심만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특허심급구조를 오는 96년 1월부터 대법원 상고전에 서울고등법원을 거치도록 함(대법원).
- 특허소송이 4심급으로 기형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허심판원을 신설, 98년 1월부터 특허청 심판을 1단계로 축소시켜 3심급으로 조정함(특허청).

- 특허심판원이 운영되기 전 2년여동안은 4심을 거쳐야 하므로 특허쟁송에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며 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관은 고도의 기술분쟁을 판결하는데 적정성과 공평성, 신속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법원안은 철회되어야 함(과학기술계).
 - 현행 특허심판제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특허심판제도가 규정돼 있는 「특허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고 만일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상공자원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돼야 할 것임(박재용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회장).
 - 일단 특허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일반법관의 전문성결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특허심리관의 준사법관으로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임(성낙인 영남대학교 교수).
- : 국민 94.4.22., 13면; 세계 94.4.17., 2면; 세계 94.6.10., 9면

○ 행정보고관련 개정의견

- 일선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업무부담을 줄임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보고사무의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하고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이 제출한 자체정비계획안을 검토, 법령의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각부처 책임 아래 올해 안에 부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시행에 옮기도록 할 방침임(총무처).

: 서울 94.5.18., 1면

○ 형사특별법 개정의견

- 「형사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형법」에 비해 지나치게 형량이 높고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일선 법관들이 이를 과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수수죄나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형사특별법」상의 일부조항들을 「형법」으로 흡수하여 형량을 현실화할 방침임(대법원).

: 세계 94.5.12., 1면

○호적법 개정의견

- 호적등·초본, 제적등본의 열람 및 교부를 원칙적으로 본인, 가족, 위임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함. 그러나 정당한 이해관계자, 다른 법령이 호적등·초본 제출을 의무화할 때, 기타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3자에게도 열람등을 허용하고 호적등·초본 자료를 무단 이용하거나 분실·도난·유출·변조·오용하는 행위, 타인의 호적등·초본등을 마음대로 교부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도 둘 방침임. 또 대도시의 경우 구와 구사이의 호적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호적법」을 고쳐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함(대법원).

: 국민 94.4.11., 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116면) 참조

III. 주요입법예고법률안

1. 주요입법예고법률안목록

(1994.4.11.~1994.6.10)

◎內務·地方行政	137
○ 수난구호법중개정안	
○ 지적법중개정법률안	
◎社會·文化·教育	13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개정안	
◎產業·經濟	139
○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科學技術·交通·遞信	141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신공항건설공단법제정안	
○ 유전공학육성법개정안	
◎環境·保健	143
○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음용수관리법안	
○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	
◎法院·法務	146
○ 경범죄처벌법중개정안	
○ 상법중개정법률안	

2. 주요입법예고법률안내용

(1994.4.11.~1994.6.10)

◎內務·地方行政

○ 수난구호법증개정안

1. 개정취지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제화로 해상교통량이 급격히 팽창되고 이로 인한 해난 사고와 인명피해가 증대하고 있어 해상 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1979년 체결)에 가입을 추진하고 그 협약내용을 수난구호법 개정안에 수용하여 범국 가적인 구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조난선박과 사람을 구조하여 인명과 재산보호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1979년 체결된 해상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난구호법에 수용
- 나. 수난구호업무 한계를 해상과 하천등으로 구분하고 수난구호체제를 민방 위기본법의 방재체제에 수용함.
- 다. 수난구호 집행자로 해상은 해양경찰서장 하천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함.
- 라. 해상 인명구조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하여 중앙구조 조정본부(해경청)와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지부(해경서) 및 구조대를 둠.
- 마. 외국 구조대가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우리영해 및 영공을 진입하는 것을 허가
- 바. 대한민국의 수색 및 구조 관할 해역에서 선박안전을 위한 구난통신 확립과 선위통보 제도실시
- 사. 구조된 선박과 사람 및 물건의 안전보호관리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토록 함.
- 아. 표류물과 침몰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자. 조난사고를 발견한 자의 신고이행 및 구조지원업무 회피자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현실화

○ 지적법증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분할 및 합병의 경우에도 촉탁등기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촉탁등기의 확대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적공부의 복제·판매금지, 지방지적위원회의 설치, 벌칙규정의 합리적 조정등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적관련 전문용어를 한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적·임야도를 복제하여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발간·비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다. 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미복구토지를 국가로 취득하고자 소유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청이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함.
- 마. 분할 및 합병 정리시에 촉탁등기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함.
- 바.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적측량적부에 관한 민원을 심사 의결하도록 보완함.
- 사. 전문용어의 한글화
 - . 지번지역→지번설정지역, 기초점→지적측량기준점
 - . 재조제→재작성, 오손 및 마멸→더럽혀지거나 많아져
- 아. 벌칙규정의 합리적 조정
 - . 허위신고 : 10만원→100만원
 - . 지적·임야도의 복제·판매위반 : 2년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 . 측량위반 : 50만원 →100만원
 - . 업무집행거부 : 10만원 →50만원

◎社會·文化·教育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개정안

1. 개정취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면 기금총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는 그 수익금만으로 근로자 복지사업을 행하도록 기금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기금이 상당한 규모로 적립될 때까지는 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일정율을 사용토록 함.

◎產業·經濟

○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1. 개정취지

도시가스 수요증가 및 전국천연가스공급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제도와 수급 및 가격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무자격자의 가스시설 시공에 대한 규제 강화등으로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한편, 일정 규모이하의 가스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가스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도·소매업을 분리하여 가스도매사업에 대한 허가는 상공자원부장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 나. 시·도지사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 할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의 전

국적인 균형발전을 뒷받침

- 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
- 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의 발생원인을 예방하고, 시공자에게는 자격자의 공사현장배치, 하도급 금지등의 의무규정을 신설
- 마.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여 시공업자의 횡포 방지
- 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허가 취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청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 사. 천연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 수립체계 확립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연도 이후 2년 이상의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여 공급관공사비의 수요자 부담의 경우를 가능한 억제
- 아. 수요자에 대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자의 무분별한 수요확대를 방지하고, 도시가스 공급중단등의 사태를 사전 예방
- 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변경을 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도록 함.
- 차.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과다징수를 방지
- 카. 가스의 수급조정을 하지 아니하면, 가스의 공급부족으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사용량의 한도, 사용용도, 사용제한 기간등을 정할수 있도록 함.

- 타. 위해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일정한 지역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파.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처리를 분리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하. 특정가스사용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시켜 사고발생시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거.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벌금액수를 현실화하고, 체형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벌금형을 보완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금부과 대신 과태료처분으로 완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科學技術·交通·遞信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및 취지

- 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근거한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통합하여 동 위원회가 기초과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흡수함.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기초과학연구진흥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신공항건설공단법제정안

1. 제정이유

급증하는 수도권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21세기동북아 중추공항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공항공단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중에서 신공항건설업무를 분리하여 신공항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건설공단은 건설에만 전념토록 하고

완공후 운영은 현 한국공항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단은 법인으로 함.
- 나. 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공항시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및 조사, 신공항접근교통시설인 도시철도 및 도로의 역세권 및 연변개발사업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다.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둠.
- 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의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재산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부채는 한국공항공단이 포괄승계도록 함.
- 마.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출연금, 한국공항공단의 분담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등에 의하여 조달하도록 함.

○ 유전공학육성법개정안

1. 개정취지

유전공학기술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여 단백질공학기술, 생물공정기술 등을 포함한 생명공학기술로 기술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21세기를 선도할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난 '83년 제정된 동 법은 이러한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기술영역을 재정의하고, 관련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생물체 이용기술의 확대발전에 따라 유전공학을 생명공학으로 재정의함.
 - (1)유전공학을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제조나 공정개선을 위하여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학문과 기술”인 생명공학으로 재정의함.
 - (2)동 법 명칭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칭하는 등 각 조항의 유전공학을 생명공학으로 개칭함.
- 나. 국가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체제를 보강함.
 - (1)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 및 응용기술개발, 유용유전자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연구지원,

· 공공기반적 생명공학 지원체제 육성 등 과학기술처의 역할을 신설함.

- (2) 보건사회부의 역할을 보건·의료·식품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관련 연구지원으로 변경함.
- (3) 생명공학연구를 통한 폐수, 폐기물처리 및 대기오염방지 등을 위한 환경 기술의 개발과 지원 등 환경처의 역할을 신설함.

다. 생물다양성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내용 보완·정비

- (1)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을 생명공학종 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함.
- (2)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기능을 한국생명공학연구소의 기능에 추가함.
- (3) 실험지침에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규정된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이전, 취급,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추가함.
- (4) 생명공학연구기금 사용목적에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추가함.

◎環境·保健

○ 수도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방침에 따라 현행 수도법상 공업용수도사업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환경처장관의 권한으로 이관하고, 기타 이와 관련된 조항 및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일정한 지역을 수원의 특별보호를 위한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지역 안에서 거래예정인 토지등에 대하여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

게 된 경우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토지의 소유자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마.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을 위하여 시·도에 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설치함.
- 바. 기타 상수도업무 이관과 관련된 각 조항의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환경처장관으로, 건설부령을 총리령으로 변경함.

○ 음용수관리법안

1. 제정이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의 일원화 시책에 따라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음용수관련규정을 통합, 단일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음용수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음용수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국가·사업자·국민의 책무를 정함.
- 나. 환경처장관은 음용수에 관한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등 음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함.
- 다. 시·도지사는 약수터등 공동음용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공동음용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 라. 광천음료수개발을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광천음료수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광천음료수 수입판매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마. 광천음료수제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매차의 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바.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음용수의 수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광천음료수 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 환경처장관은 음용수관련제품 및 용기등의 성분, 제조·보존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광천음료수에 관하여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음용수관련영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원상회복명령, 폐쇄조치, 폐기처분, 허가취소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 기존의 광천음료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차. 이 법 시행당시 광천음료수개발을 위하여 이미 토지를 굴착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하수도업무가 환경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현행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고, 동 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함.
-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도록 함.
- 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를 면제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라.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수질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수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하수의 양·수질 및 배수설

비사용개시 시기등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함.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

1. 제정이유

환경라운드 및 지구환경문제등으로 환경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환경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환경기준을 조기에 달성하고, 저오염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표지제도 및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장기 환경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의 출연금등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나. 환경처장관은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된 기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다. 중소기업의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공공의 환경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기술진단실시근거를 마련함.
- 라. 저오염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표지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근거를 마련함.
- 마. 환경표지 제품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로 하여금 우선구매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함.

◎法院·法務

○ 경범죄처벌법증개정안

1. 개정이유

경범 범칙금 납부기간(7~10)이 짧아 국민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미납자 발생이 많아지고 즉심 업무량도 증가되고 있어 범칙금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인력

· 시간·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기한을 현행 7~1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통일하고 10일이 지난후 다시 20일 이내에는 납부하여야 할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함.

○ 상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상법중 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에 대하여 그간 급속히 진행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미쳐 따르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조항들을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업설립에 있어서의 제한을 완화하며,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활동을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 대하여는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읍·면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읍·면은 지나치게 협소한 지역 단위로서 통상적인 상거래 범위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므로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확대함.
- 나. 국내외 상거래 관행의 추세를 반영하여 종래 기명 날인하도록 된 문서작성 방법을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전표등에 대하여는 5년간만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도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정보보존장치의 사용을 허용함.
- 라. 신종 상행위의 등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본적 상행위의 종류에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등을 추가함.
- 마. 사원들의 주소지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및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어 매번변경하여야 하는 등 비현실적이므로 평사원의 경우 주소지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바. 발기인 수를 7인 이상으로부터 3인 이상으로 축소하고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된 제한을 철폐하여 회사설립의 편의성을 도모함.

- 사. 예상치 못한 주식지분율의 변동으로 인한 경영권의 불안정을 막기 위하여 정관에 기재된 경우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개별적 승인을 요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양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주식의 전환을 허용하되 다만, 그 기간중에는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혼선을 방지함.
- 자. 주식이 폭넓게 분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주주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 제한을 철폐함.
- 차. 영업의 양도·양수·임대등 주요사안에 대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소주주의 이익을 보장함.
- 카. 발행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증자한계규정으로 인하여 대규모증자가 불가능한 점을 해소하고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한계를 철폐하여 수권자본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 타. 개업비, 연구개발비를 자산부에 기재한 후 5년내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행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상법상 근거를 마련함.

IV. 최신법령 목록

(1994. 4.11. ~ 1994. 6.10)

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조약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력에관한협정	1994. 4.16
	대한민국정부와페루공화국정부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	1994. 4.16
	대한민국정부와아일랜드정부간의경제·산업과학·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4. 4.23
	대한민국정부와불가리아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력에관한협정	1994. 4.30
	대한민국정부와그리스정부간의과학기술협력협정	1994. 5. 9
	대한민국정부와스페인왕국간의문화협력협정	1994. 5.30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1994. 5.28
대통령령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12
	항로표지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16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16
	남북및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규정폐지령	1994. 4.20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1994. 4.21
	국무총리비서실직제중개정령	1994. 4.21
	행정조정실직제중개정령	1994. 4.21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4.21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4.21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4.21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4.21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4.22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22

공포번호	전명	공포연월일
14222	자연공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30
14223	군기령중개정령	1994. 4. 30
14224	양곡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30
14225	철도운송규정중개정령	1994. 4. 30
14226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30
14227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4. 30
1422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4. 4. 30
14229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30
14230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30
14231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30
14232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4. 4. 30
14233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4. 4. 30
1423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	1994. 4. 30
14235	토지관리및지역균형특별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30
14236	기능대학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4. 30
14237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4. 30
14238	행정쇄신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4. 4. 30
14239	해운항만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4. 30
14240	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4. 30
14241	공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5. 4
14242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규정폐지령	1994. 5. 4
1424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1994. 5. 4
14244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개정령	1994. 5. 4
14245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5. 4
14246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5. 4
1424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5. 4
14248	재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5. 4

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14249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5. 4
14250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5. 4
14251	문화재관리국직제중개정령	1994. 5. 4
14252	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5. 4
14253	과학기술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5. 4
14254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5. 4
14255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5. 4
14256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4. 5. 4
14257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	1994. 5. 9
14258	국군기무부대령개정령	1994. 5.13
14259	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중개정령	1994. 5.16
14260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중개정령	1994. 5.16
14261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4. 5.16
14262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1994. 5.16
14263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	1994. 5.16
14264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4. 5.16
14265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5.20
1426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5.20
14267	측량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5.23
14268	대외협력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4. 5.24
1426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5.26
14270	결핵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5.27
14271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5.28
1427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4. 5.28
1427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1994. 5.30
14274	철도보호지구설치령개정령	1994. 5.30
14275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1994. 5.30
1427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령	1994. 5.30

공포번호	제명	공포연월일
14277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994. 6. 4
총리령 45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5.24
453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5.24
45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5.24
외무부령 175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개정령	1994. 4.18
내무부령 615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5.31
616	자연공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5.26
재무부령 197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개정령	1994. 4.13
1971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4. 4.18
1972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중개정령	1994. 4.18
1973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4.18
1974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4.18
1975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4.30
1976	신용카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4.30
1977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5.13
1978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5.13
1979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5.14
198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중개정령	1994. 6. 1
1981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5.21
법무부령 384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6. 2
385	검찰청관인관리규칙	1994. 6. 2
교육부령 647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개정령	1994. 4.19
648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4. 5.12
649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1994. 6. 4
농림수산부령 1134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4.18
113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4. 5.13
1136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4. 5.14

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1137	어획물운반업허가에관한규칙증개정령	1994. 5.14
1138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1994. 5.14
1139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4. 5.14
1140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5.21
1141	양곡관리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5.25
1142	생사류검사규칙증개정령	1994. 5.31
상공자원부령 35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4.12
건설부령 552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증개정령	1994. 5.14
553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4. 5.13
554	주차장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5.26
555	부동산증개업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6.10
보건사회부령 928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증개정령	1994. 4.23
교통부령 1022	고속철도운전에관한시조직설치규칙	1994. 4.30
1024	재단법인홍익회감독규정폐지령	1994. 2.14
1025	도시철도건설규칙	1994. 5. 9
1026	주차장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5.26
체신부령 870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4. 5. 9
871	무선설비규칙증개정령	1994. 5.25

국내입법의견조사 94-3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1994년 8월 5일 印刷

1994년 8월 10일 發行

發行人 張明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 컴퓨터 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3,000원

